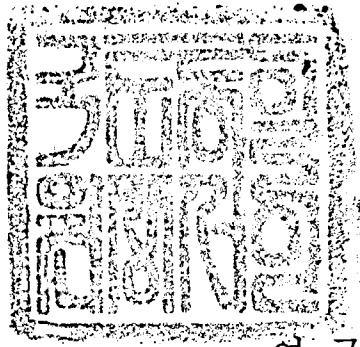


남북한 한글맞춤법 비교



1989

연구 책임
이강로 (한글학회 학술이사)

국토통일원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최근 변경된 南北韓의 맞춤법
變化實態를 比較하여 差異點을 도출, 향후 南
北韓 한글共同研究에 對備하고자 위촉한 特殊
課題 研究結果입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關聯分野의 研究에 一
助가 되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
된 內容은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1989.12

調查研究室

차 례

I . 머리에	3
II . 남북한의 한글 맞춤법 실태	4
III . 남북한 한글 맞춤법의 차이점 비교	99
IV . 공동연구 방안	110

I. 머 리 에

이 글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어 통일 한국의 실현에 대비하여, 언어정책 중 그 기초가 되는 맞춤법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한국에서 국책으로 널리 시행하고 있는 맞춤법에 대하여는 제정 당시에 이미 언어학적 이론에 근거하였고 이것이 실지의 문자생활 교육제도 등에 자연스럽게 널리 통용되어 새삼스럽게 여기에 대하여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북한에도 그들 독자적으로 표준어 맞춤법 등을 제정하여 국민에게 그의 사용을 지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 표준어 맞춤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1989년에는 1966년에 제정 공포한 조선말 규범 등을 재정리 집대성하여 조선말 규범집을 펴냈다. 이와 같이 북한이 한국과는 달리 언어 정책면에서까지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으나, 모든 여건은 통일쪽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한국의 맞춤법과 북한의 규범집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 시정할 점, 공동 연구할 점 등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여 하나의 통일된 언어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앞으로 실현될 통일에 대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언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기초자료로서 쓰여진 것이다. 전개 순서나 서술의 방법은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을 대상으로 그장(章) 항(項) 등을 한글 맞춤법과 비교하여 그 공통점 차이점 등

을 검토 연구하고, 이 두 표기 체계에서 드러난 차이점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끝으로 남북한의 공동 연구 과제를 발견하여 미래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표준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들은 모두 한글 맞춤법과 표준말에 의거하였다.

Ⅱ. 남북한의 한글 맞춤법 실태

1945년 국토가 양분되어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만 44년이 되었다. 그 동안에 남한에서는 1933년에 당시의 조선어 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말의 글자 생활을 착실하게 영위하여 왔다. 1945년에 조국이 광복된 뒤에도 기존의 한글 맞춤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아무 혼란없이 안정된 기초위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광복 초기에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다가 1966년에 규범집이 간행되어 이른바 문화어 운동이 시작되면서 1968년에는 그네들의 학습지인 ‘문화어학습’이 창간되고 이것을 계기로 북한을 단위로 한 언어정책 맞춤법의 규정, 표준어의 책정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동일한 언어이던 한국말이 언어생활 면에서나, 표기 생활면에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여러 언어 문제 중 문자생활의 핵심이 되는 표기문제를 중심으로 그 일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맞춤법의 비교

남한의 한글 맞춤법(이하 한맞으로 줄임)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교부 제정 '한글 맞춤법'을 바탕으로 하고 북한의 맞춤법(이하 '북맞'으로 줄임)은 1988년에 북한의 국어 선정 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선말 규범집'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1) 맞춤법의 기본 개념

맞춤법을 제정한 기본 정신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남한에서는 언어를 언어학적 보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다. 그의 규범집의 머리말에 보면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족어가 활짝 꽃피나고 있으며;.....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산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언어 규범을 사람들의 언어 실천에 더 잘 복무할 수 있도록

등의 군더더기 말이 쓰이었다.

언어 규범집에 '사회주의적 민족어',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등의 말이 무엇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언어를 의사 소통의 도구로 보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언어를 혁명

이나 사회주의의 도구로 보려는 속셈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2) 맞춤법의 짜임새

‘한맞’과 ‘북맞’의 장(章) 절(節)나누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남 맞 (1989 년)	북 맞 (1989 년)
제 1 장 총 칙	총 칙
제 2 장 자 모	제 1 장 조선어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제 3 장 소리에 관한 것	
제 4 장 형태에 관한 것	제 2 장 형태부의 적기
제 5 장 띄어쓰기	제 3 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
제 6 장 그밖의 것	제 4 장 합친말의 적기
부 록 문장 부호	제 5 장 앞붙이와 말뿌리의 적기
	제 6 장 말뿌리와 뒤붙이 (또는 일부토)의 적기
	제 7 장 한자말의 적기

이 두 맞춤법을 보면 ‘한맞’에는 평범한 규정인데, ‘북맞’의 제 1장에서 ‘조선어’하는 말을 덧붙이었다. 그리고 술어도 ‘뒤붙이, 앞붙이’들과 같은 생소한 말을 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술어를 달리 제정하여야 할 어학적인 필요성보다도 남한의 것과는 ‘달리’ 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한맞’에서는 제 6장 다음에 부록으로 ‘문장 부호’의 규정을 두었는데, ‘북맞’에서는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에 대하여는 맞춤법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맞춤법과 병립시키기에 따로 규정을 만들었다.

① ‘한맞’의 해설

이 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 세 가지의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짜여져 있다.

ㄱ. 표준어를 맞춤법 규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ㄴ. 대상이 되는 표준어는 그 발음대로 충실히 적는다.

ㄷ.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더라도, 그것이 우리말의 말본 체계에 맞게 적어야 한다.

이 세 요소는 대원칙이고 세부적인 것은 각론에서 논하였다.

표준어 : 이 표준어는 그 지시하는 바의 의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한된 지면에서는 모두 설명하기 어렵고, 표준어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으로 미룬다. 다만 그 큰 벼리는, 지역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방에서 쓰는 말이고, 시대적으로, 옛날말이 아닌 현재 쓰고 있는 말이고, 굳이 계급을 따진다면, 중산층을 주축으로 한 가장 광범위한 계층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물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가르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우선 맞춤법의 이해에 바탕이 될 만한 것으로는 이 세 요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소리 : 이 ‘소리대로 적는다’는 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

니다. 소리대로 적는 대상을 표준어라고 하였다. 표준어는 표준말이 되는 낱말(단어)라는 뜻인데, 이 한 낱말 중에는 두 요소로 다시 가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들은 한 낱말이면서도, 공통점을 가진 ‘먹-’과, 이에 딸려 있는 ‘-다, -고, -어, -으니’의 두 요소로 가를 수 있다. 이 중, ‘먹어, 먹으니’들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머거, 머그니’로 적어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1980년에 한글학회에서 개정한 ‘한글 맞춤법’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의 각 형태소를 소리대로 적되, ……………

라고 개정하였는데, 문교부 제정 ‘한글 맞춤법’에서 도로 환원시키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글 학회의 ‘한글 맞춤법’이 더 분명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하겠다. 형태소는 언어의 최하위 단위이므로 이 최하위 단위를 맞춤법 규정의 바탕으로 삼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리방법이다. 이렇게 적으면,

‘어깨’를 엇개, 엇개로

‘으뜸’을 웃듬, 웃뚸므로

‘먹어’를 머거로 ‘먹으니’를 ‘머그니’로

‘꽃잎’을 꼰닙, 꼰잎, 꼰뵈,

‘жат죽’을 자쭈, 자쭈

들로 적을 수도 있다는 항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법에 맞도록 함을……………’이란 규정으로 수정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이중의 제약장치는 그 목표를 더욱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어법 :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이 두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어법에 맞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앞의 보기에서 ‘먹어’나 ‘머거’, ‘먹으니’와 ‘머그니’의 실현된 소리는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에 어법의 잣대로 맞추어 보면 옹고 그룹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형태소 분석의 이론에 의하여 간단히 가려 낼 수 있다. ‘먹어’에 연결된 ‘-어’는 신어, 단아, 열어, 물어, 두어…………… 들에서 ‘-어’가 독립된 형태소임을 알 수 있고, ‘-으니’도 같은 이론에서 신으니, 단으니, 열으니 → 여니, 물으니, 두으니 → 두니 들에서 ‘-으니’가 독립된 형태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표준어의 형태소를 소리대로 적되, …………… 의 규정에 따라, 먹어, 신어, 단아, 먹으니, 신으니, 단으니 들로 써야 한다는 규정에 일호의 의심이 없이 딱 드러맞는다. 다음은 ‘복맞’에 대하여 살펴 보자

② ‘복맞’의 해설

‘복맞’의 규정에도 대체로 세부분으로 크게 갈라 볼 수 있다.

ㄱ. 조선말 맞춤법은

ㄴ.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ㄷ. 일부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

우선 7에서부터 풀이하기로 한다.

조선말 : 이 말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남한이 한국으로 호칭하는 데 대한 일종의 반항 심리의 표현인 듯하다. 그러나,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자기주장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도리어 왜소화한 듯한 느낌이 든다. 남한에까지 확대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네대로 호칭하는 ‘조선말’이란 말을 씌으로써 자기네의 세력 범위를 북한으로 제한하여 놓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언어, 즉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언어라는 순수성을 살리어서 그것을 그 나라의 말의 특성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대경대도(大經大道)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도 그 지방 고유의 여러 방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그 곳에서는 문화어란 말을 내세워 이것을 기준으로 언어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 이 문화어에 대하여는 별도로 논하겠기에 여기에서는 줄인다.

소리 : 북한의 규정집에서는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이란 말을 썼다.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단어(Word)는 뜻과 소리가 합한 단위인데, 이것은 형태소의 개념과 일치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좀 막연한 술어이다. 그러므로 ‘한말’에서는 단어라고만 하여서는 그 개념이 모호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태소라는 말을 사용하여 처리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그 단어에서 또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이라 하였으니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유 목상(1989:45)은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은 남한의 형태소(북한의 형태부)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형태소 자체가 소리에 뜻이 합한 최소의 단위인데, 이 중에서 어떻게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가려 낼 수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이다. 이 말은 ‘한맛’의 소리 나는 대로 적기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것도 부적절한 대목이 없지도 않다.

허용규정: ‘일부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는 ‘일부’란 말을 앞에 놓았다. 이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와, 관습을 따라 적는 경우를 대등하게 본 것이다. 이 규정은 ‘소리 나는 대로’와 ‘관습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소리’가 다른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엄밀히 따져서 언제나, 같은 소리로 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개구리〔蛙〕는 개구리, 개구락지, 개구락지, 개고리………… 들의 여러 말이 있다.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환경에서 발음한 사람도 앞뒤의 한 말이 다를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개구리, 나중에는 개구리, 개구락지………… 들로 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경우를 가상하여 교과서나 그밖의 출판물에서는 표준말을 쓰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속력이 강한 말은 ‘총칙’에서 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도 표준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대답에 쓰는 ‘예’가 있다. 이것이 표준말인 만큼 교과서에는 이 ‘예’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발음에는 야(충청도 방언) 네, 네, …………… 들로

발음하는 것을 흔히 들을수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언어 교육이요, 이것을 소리대로 적으라고 규정한 것이 맞춤법의 규정인데, 이것을 총칙에서부터 허용규칙을, 그것도 대등한 위치에서의 허용 규칙을 명문화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③ ‘한말’과 ‘북말’의 비교

표기 대상 : ‘한말’의 표기 대상은 한국 민족(남북한을 통틀어)이 하루하루 언어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표준이 될 만한 말을 가리어 표준어로 책정하고 모든 표기 원칙은 이 표준어를 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말’에서는 막연하게 ‘조선말이’라고 하였다. 이 ‘조선말’이란 개념 자체가 너무 영성하여 맞춤법의 규범이 될수 있는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부적당하다.

3) 비교 검토의 방법

‘한말’과 ‘북말’의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같은 듯하면서도 서로 다른 점이 상당히 눈에 뜨인다.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북말’을 기본으로 하고, 이와 비슷한 장이나 절을 서로 비교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을 옮겨 적고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더러는 필요한 부분만을 옮겨 적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4) 각 장(章) 절의 비교

(1) 제 1장 총칙과 총칙

이 총칙은 ‘한말’이나 ‘북말’ 모두가 한글맞춤법 전체의 정신과 그

기가 매우 어렵다.

총체적으로 모호한 표현으로 추상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 2 항, 제 3 항

제 2 항과 제 3 항은 ‘한맞’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북맞’에는 이 조항이 없다. ‘한맞’에서도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표준어 표기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3) 제 1 장 조선어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자모에는 두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음절을 이루는 요소로 자음과 모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음의 ‘자’와 모음의 ‘모’를 골라서 붙인 이름이다. 표의 문자인 한자나, 일본의 가나(假名)들은 한 음절을 한 글자로 표시하게 되었으므로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따로 없다. 그러나, 한글에는 홀소리 글자와 닿소리 글자가 따로 있어서 이것들을 서로 연결시키어 한 음절의 글자로 다시 맞추어 쓰게 된 것이 한글의 특징이다. 이 글에서는 이 자모에 대한 ‘한맞’과 ‘북맞’의 규정을 서로 비교 검토하여 해설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 맞

북 맞

제 1 항 한글자모의 수는 스물네자 제 1 항.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으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름은 다음과 같다.
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귤),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읓),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읇)

ㅏ (야),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ㅊㅊ (쌍기역), ㄷㄷ (쌍디귤),

ㅂㅂ (쌍비읍), ㅅㅅ (쌍시옷),

ㅈㅈ (쌍지읒)

① 한맛의 해설

이름 : 한글 자모의 이름은 중종 22년 (1527)에 최세진이 훈몽자회 (訓蒙字會)의 범례에 비로소 나타난다. 그 이후 이 이름이 보편화하여 관습적으로 써오던 것을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명문화한 것이다. 이 이름 붙인 원리를 살펴 보면, 첫째 음절의 첫소리는 모두 그 자모가 한 음절의 첫소리로 쓰일 때의 발

ㄱ ㄴ ㄷ ㄹ
(기역), (니은), (디귤), (리을),

ㅁ ㅂ ㅅ ㅇ
(미음), (비읍), (시옷), (어응),

ㅈ ㅊ ㅋ ㅌ
(지읒), (치읓), (키읓), (티읕),

ㅍ ㅎ
(피읖), (히읇)

ㅊㅊ ㄷㄷ ㅂㅂ
(된기읓), (된디귤), (된비읍),

ㅅㅅ ㅈㅈ
(된시읒), (된지읒)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야), (야), (어), (여), (오), (요), (우), (유),

ㅡ ㅣ ㅐ ㅑ ㅒ ㅓ ㅔ ㅕ
(으), (이), (애), (애), (애), (애), (외), (위),

ㅖ ㅗ ㅘ ㅙ ㅚ
(외), (와), (위), (웨), (웨)

자음글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부를 수도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ㅋ), (ㅌ), (ㅍ), (ㅎ), (ㅊ), (ㅈ), (ㅈ),
(ㅈ), (ㅈ)

음 소리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 보기를 들면 ‘ㄱ’이 모음의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들과 이어지면 그 발음은

가, 가, 거, 거, 고, 교, 구, 구, 그, 기 등과 같이 된다. ㄴ, ㄷ, ㄹ, ㅁ……들도 모두 이의 원리를 따랐다. 다음 한 음절의 끝소리에 ‘ㄱ’이 쓰이면

각, 격, 곡, 국, 극……들과 같이 발음된다. ㄴ, ㄷ, ㄹ, ㅁ……들도 모두 이 원리에 따랐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한글 자모의 이름은 매우 합리적으로 지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ㅏ, ㅑ, ㅓ, ㅕ들은 그 글자의 발음을 그대로 이름으로 삼았다. 이런 글자는 모음을 이르는 것인데, 이 모음은 자음 글자처럼 첫소리나 끝소리로 양분되어 쓰이지 않고, 언제나 자음 글자의 뒤(ㅇ도 자음글자로 보는 견해에 따랐음)에만 쓰이기 때문에 두 음절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한 음절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그 발음을 그대로 한글 모음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다음은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은 것으로 자음 글자들을 어울려 적은 것과 모음 글자들을 어울려 적은 두 유형이 있다.

자음 글자 두 개를 어울려 적은 ㄲ, ㄸ, ㅃ, ㅆ, ㅉ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발음은 된소리로 나지만 글자로는 두 글자를 어울려 적은 것이다. 이 때의 글자 이름은 글자 쪽을 갖대로 삼아 한 글자가 쌍으로 겹쳐진 것을 기준으로 하여 본디의 이름 앞에 ‘쌍’자를 덧붙이어 ‘쌍기역, 쌍디긋,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부르게 한 것이다.

모음의 경우에도 으뜸 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글자 모양의 겹친 상태에 관계없이 그 발음되는 그대로를 글자 이름으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개’는 ‘애’, ‘개’는 ‘애’들로 지은 것이다. 석 자의 어울림으로 된 ‘개’나 ‘개’도 이 원리에 따라 ‘개’는 ‘애’, ‘개’는 ‘웨’로 이름 붙이었다.

자모의 수 : 한글 자모의 수를 24자로 정하여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으뜸되는 글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밖에 이 으뜸 글자를 되게 발음할 때에 쓰는 글자로서 ㄱ, ㅋ……들 5개 글자와 ‘ㅏ’와 ‘ㅑ’가 합한 ‘개’들과 같이 두 글자가 합하여 이루어진 9글자와 ‘개, 개’들과 같이 석 자가 어울린 2개 글자를 합하면 자음글자가 으뜸 글자 14개 어우른 글자 5개 모두 19개이고, 모음 글자로서 한 글자로 된 으뜸글자가 10개 둘이 어울린 글자 9개 셋이 어울린 글자 2개 모두 21자로서 자음 모음의 으뜸 글자와 어울린 글자를 모두 합하면 총수가 모두 40개가 된다. 이 40개의 글자는, 한 글자가 한 음운(phoneme)을 실현하는 원리에 따르면 40개의 음운을 글자를 빌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자모의 순서 : 자모의 순서는 자음이나 모음이나 제 4항의 배열순서가 곧 자모의 순서가 된다. 이런 논리에서 모든 숫적인 처리를 ㄱ순서로 처리한다 하면 그 배열 순서는 반드시 제 4항 규정의 순서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순서를 정하여 놓지 않으면 각자의 주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배열할 수 있는 소지(素

地)가 있기 때문에 국어 표기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이다.

이에 덧붙이어 [붙임 2]에서 사전에 올릴 적의 순서를 명시한 것은 ‘ㄱ’과 ‘ㄲ’을 단순히 글자의 겹친 것으로 보면, 가뜻가 뜻 까뜻까뜻……의 순서로 되지만, 이 둘을 전혀 별 개의 글자로 보면 가뜻가뜻, 거뜻거뜻……들과 같이 ㄱ 첫소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다시 ㄲ 첫소리를 가진 글자의 순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실지로 남한의 여러 사전 중에는 앞엿 방식을 따른 사전이 있고, 뒤엿 방식을 따른 사전도 있다. 더우기 도서관에서, 도서를 ㄱㄲ……순서에 따라 배열할 경우 이 두 갈래 순서의 차이는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사전적인 순서를 정하여 놓은 것이다. 모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맞춤법 규정에 덧붙여 사전적 배열 순서를 규정화한 것은 뜻깊은 처리방법이라 하겠다.

② 북말의 해설

‘북말’에서는 남한에서 사용하는 ‘한글’이란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있다. 맞춤법은 말하는 행동의 분야가 아니고, 쓰기의 영역에 속하는 데도 꼭 ‘조선말’ 또는 ‘조선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말과 글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식적으로 한글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는 것 같다.

이름 : 한글 이름에서 ㄱ을 ‘기옥’ ㄷ을 ‘디은’으로 고치었고, ㄲ, ㄸ, ㅂㅂ, ㅅㅅ, ㅆㅆ들의 이름은 본디의 이름 앞에 ‘된’을 붙이

어 ‘한맞’의 ‘쌍’과 대립시키고, 이것은 ‘한맞’에서는 글자에 기준을 둔 데 반하여 북맞에서는 소리에 기준을 두었다. ㄱ을 들 합치면 ‘쌍’으로 된 것이니까 ‘쌍기역’이란 말이 될지언정 글자 자체가 되어지〔濃〕지는 않을 것이다.

‘자음 글자의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부를 수도 있다’하고 (ㄱ) (ㄴ)…… 들을 열거하였다. 이것은 ㄱ의 이름을

‘기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ㄱ)라고 부를 수도 있다

고 해석되는데, 이렇게 되면 ㄱ도 ‘그’로 읽고, ‘그’도 ‘그’로 읽는 결과가 되는데, 이 경우의 ‘그’를 과연 ㄱ의 이름으로 볼 수 있을까 자못 의심스럽다. 이밖에 자모의 수는 ‘한맞’과 같게 규정하였고, 순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열 순서가 곧 자모의 순서가 된다고 하겠다.

③ ‘한맞’과 ‘북맞’의 비교

‘한맞’에서는 맞춤법의 모체인 글자에 대한 규정이고, 글자의 이름이 ‘한글’이므로 이 ‘한글’이란 말을 40개의 자모에 공통으로 썼다. 그러나, ‘북맞’에서는 글자에 관한 규정인 데도 ‘한글’이란 말은 일체 쓰지 않고 조선말, 조선어들과 같이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용어를 썼다.

제 2장 형태부의 적기

제 2항 조선어의 글에서 쓰는 받침은 다음과 같다.

ㄱ - 책 (책이, 책을, 책에)

먹다 (먹으니, 먹어, 먹지)

ㄱ-긋 (긋이, 긋을, 긋에)
 ㄴ-논 (논이, 논을, 논에)
 안다 (안으니, 안아, 안지)
 ㄴ-앉 (앉으니, 앉아, 앉지)
 ㄴ-많 (많으니, 많아, 많지)
 ㄷ-날알 (날알이, 날알을, 날알에)
 굳다 (굳으니, 굳어, 굳지)
 듣다 (들으니, 들어, 듣지)
 ㄹ-길 (길이, 길을, 길에)
 멀다 (머니, 멀어서, 멀지)
 ㄹ-닭 (닭이, 닭을, 닭에)
 맑다 (맑으니, 맑아, 맑지)
 ㄹ-삶 (삶이, 삶을, 삶에)
 짧다 (짧으니, 짧어, 짧지)
 ㄹ-여덟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넓다 (넓으니, 넓어, 넓지)
 ㄹ-돋 (돋이, 돋을, 돋에)
 ㄹ-훔 (훔으니, 훔어, 훔지)
 ㄹ-옴 (옴으니, 옴어, 옴지)
 ㄹ-옴 (옴으니, 옴아, 옴지)
 ㅁ-밤 (밤이, 밤을, 밤에)
 심다 (심으니, 심어, 심지)
 ㅂ-집 (집이, 집을, 집에)
 곱다 (곱으니, 곱아, 곱지)
 굽다 (구우니, 구워, 굽지)

ㄴㅎ, ㄹㅅ, ㄹㅈ, ㄹㅊ, ㄹㅎ, ㅁㄱ, ㅁㅅ, ㅁㅈ 따위의 받침들을 더 쓴다' 하고 ㄷ받침에서 시작하여 이 열 여덟 개의 받침을 그것이 쓰이는 토박이말을 한자말을 덧붙이어 쓰게하였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던 1933년에는 맞춤법의 규정이 없고 둘받침이나 쌍받침은 일반에게 매우 생소하여, 이것을 규칙으로 제시하지 않고서는, 당시의 맞춤법에 서투른 일반재정을 이끌어 갈 수가 없으므로 규칙화한 조문이다. 이 규정이 반세기 이상 지나는 동안에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고, 또 이 규정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하여 이제는 잘못 쓰는 사람도 없고 아주 관습으로 익어져서 이 이상 규정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1980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개정본인 '한글 맞춤법을 펴낼 때 이미 폐기하였고, 1988년 1월에 문교부 제정 '한글 맞춤법'에서도 이 규정이 필요없음을 인정하고 폐기하여 버린 것이다. '북맞'에서 이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글 맞춤법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배열 순서는 임자씨, 풀이씨를 한테 섞어서 ㄱㄴ 차례로 배열하되, 둘받침은 으뜸 글자 다음에 배열하고 쌍받침의 ㄱㅅ, ㅁㅈ은 맨 뒤에 넣었다. 그런데 이것을 '제 2장 형태부의 적기'의

제 2항 조선어의 글에서 쓰는 받침은 다음과 같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적기 규정의 맨앞에 두었다. 이것은 이 규정에서 말로는 끝소리, 적기로는 받침에 해당하는 것을 널리 알려서 잘못이 없게 하려는 속셈인 것 같다.

제 3항 받침 《ㄷ, ㅌ, ㅍ, ㅍㅍ, ㅆ, ㅅ》가운데서 어느 하나로 적어야 할 까닭이 없는것은 관습대로 《ㅍ》으로 적는다.

례 : 무릇, 빗나가다, 사뭇, 솟들, 찻째, 헛소리, 햇곡식, 얼핏, 읽으렸다

이 규정은 한말의 제 7항과 ‘제 30항’의 ‘2’에 해당하는 규정인데 한말에서는 “ㄷ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을”을 《ㄷ, ㅌ, ㅍ, ㅍㅍ, ㅆ, ㅅ》들로 고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첫째, ‘례 : ’의 ‘햇곡식’은 ‘해’가 으뜸꼴로서 받침이 없는 말이다. 이 해는 ‘日·年’의 토박이말로써 ‘그 해에 새로 나온 곡식’이란 뜻이다. 이런 까닭에 ‘쌀[米]’의 앞에서는 ‘햅쌀’로 적지 않는가. 그 까닭은 ‘해’는 받침이 없는 말이고, ‘日’이 덧붙여간 것은 옛말의 ‘밭’이 된소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탈락하였던 것이 합성어가 되면서 관습에 의하여 도로 끼이어 든 것이다. 그러므로 본디부터 있던 받침이 아닌 것이다.

둘째 ‘ㅌ, ㅍㅍ, ㅆ, ㅅ’의 받침들은 모두 그렇게 적어야 할 까닭이 있어서 받침으로 쓰인 글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받침 중에서 ‘ㅍ’으로 소리나는 까닭은 언어 환경에 의하여 그렇게 나는 것이므로 아무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한글 맞춤법통일안’(이하 ‘통일안’으로 줄임)에서는 ‘재래의 버릇을 따라’라는 말을 덧붙여서 흘소리토씨나 흘소리가지 따위가 붙어서 ‘ㄷ’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옛날부터 써 내려온 ㅍ으로 적는다고 명시하였다.(통일안(1975년 346판:16))

제 4 항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자음은 혀옆소리가 아닌 한에서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

(ולם)

(그름)

례 : 1) 겨누다
 디디다
 미덥다
 매추리
 비치다
 쇼쿠리
 시키다
 지키다
 여기다

견우다
 딴이다
 믿업다
 맏추리
 빛이다
 속후리
 식히다
 직히다
 억이다

2) 기쁘다
 바싹
 부씩
 해쓱하다
 아끼다
 여쭙다
 오빠
 우뚝
 으뜸

깃쁘다
 밧삭
 붓석
 햇쓱하다
 앓기다
 옛주다
 읍바
 웃뚝
 웃뚝

이 규정은 ‘한 형태부 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자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이 주축을 이루고, 혀옆소리만은 받침으로 적는 것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예외 규정으로 되었다. 그런데 ‘례 : ’에서 보면 1)은 예사소리〔平音〕에 대한 규정이고, 2)는 된소리〔硬音〕에 대한 규정이다. 이 중 1)의 ‘미덥다’는 현재의 형태론적 분석법에 따르면 세 형태소로 분석될 수 있는 말이다. 즉, ‘믿- -업- -다’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한 형태소로 보기에 는 무리가 뒤따른다. 따라서 한맞에서는 제 22 항에서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

을 밝히어 적는다' 하였다. '미덥다'는 '밑-'은 어간, '-업-'은 접미사, '-다'는 어미이다. 그리고 그 [붙임]으로써 '-업- -음-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제 19 항의 조항을 원용하여 발음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다음에 2)에 속하는 말들은 한맞에서는 제 5 항에서 두 유형으로 갈라서 분명히 제시하였는데, 기쁘다 이하의 어례가 이에 속한다. 이 중에서 '기쁘다'만은 '미덥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깃- -브- -다'의 세 형태소로 분석되는 말이므로 이 규정에 넣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한맞에서는 제 5 항에 넣어서 처리한 것이다. '례 : 1)'에 제시한 말들은 앞의 문젯성이 있는 것을 제하고는 규정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므로 한맞에서는 이런 말들은 제외된 것들이다.

이 규정도 규정으로 성립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첫째는 형태소 분석 이론이 철저하지 못하고, 둘째는 조문의 내용이 모호하다. '혀옆소리가 아닌 한에서' 하였는데, 그러면 혀옆소리가 아닌 '겨누- 디다- 비치- 시키-'들도 포함되는데, 이것이 '오빠 우뚝'들과 다른점이 없다. 이것은 한맞의 규정이 훨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제 5 항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혀옆소리는 《ㄹ ㄹ》로 적는다.

(움음)

(그름)

례 : 걸레

걸네

놀라다

놀나다

벌레

벌네

실룩실룩

실눅실눅

빨래
알락달락
얼른

빨내
알낙달낙
얼는

이 규정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 당시에 ‘결레’, ‘결네’, ‘벌레’, ‘벌네’들과 같이 혼동할 염려가 있어서 설정하였던 것인데, 이런 말이 새로운 맞춤법에 의하여 모두 통일되어 혼란이 일어날 여지가 없으므로 ‘한말’에서는 폐기하여 버린 것이다. 이것을 한말의 폐기 시기에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맞춤법에 대한 일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자료가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항 한 형태부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된소리로 적는다.

(울음)

(그름)

레 : 걸써	걸서
말씀	말슴
몽뚝하다	몽둑하다
반짝반짝	반작반작
벌써	벌서
활짝	활작
훨씬	훨신
알뜰살뜰	알들살들
움작달작	움작달삭

그러나 토에서는 <ㄹ> 뒤에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울음)

(그름)

레 : ~ㄹ가	~ㄹ까
~ㄹ수룩	~ㄹ쑤룩
~ㄹ지라도	~ㄹ찌라도
~울시다	~울씨다

이 규정은 원칙과 예외의 두 갈래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그런데 원칙에는 ‘ㄴ, ㄹ, ㅁ, ㅇ’의 네 소리 다음에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고, ‘그러나’, 이하의 예외 규정은 ‘ㄹ’ 다음에 된소리로 나는 어미를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규정 자체의 개념이 모호하다. 그리고 적는 방법도 정반대이다. 이런 경우에는 별항(別項)으로 규정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한맞’에서는 제 5항의 ‘2’에서 ‘ㄴ, ㄹ, ㅁ, ㅇ’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소리대로 적기로 규정하였다. ‘북맞’의 ㄹ 다음에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로 적지 않기로 한 규정은,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원칙은 ‘한맞’과 ‘북맞’이 같으나 ‘북맞’에서는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면서, ‘ㄴ, ㄹ, ㅁ, ㅇ’의 적기 규정과 한 범주에 넣은 것은 논리에 어긋나므로 53항에서 적기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한맞에서 예외 규정으로 된소리로 적지 않기로 규정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으)ㄹ까? -(으)ㄹ꼬? -(스)ㅂ니까? (으)ㄹ까? (으)ㄹ쏘냐’들을 북맞에서는 반대로 된소리로 적지 않기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과 같이 ‘북맞’에서 1개 규정으로 통합된 것이 한맞에서 2개 규정으로 갈라진 것이나 ‘한맞’에서는 된소리로 적기로 된 것이 ‘북맞’에서는 된소리로 적지 않기로 된 것 따위는 순수한 어학적인 위치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제-7항 형태부의 소리가 줄어진 경우에는 준대로 적되 본래 형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받침을 바로잡아 적는다.

(옴음)	(그림)
례 : 갖가지 (가지가지)	갖가지
갖고 (가지고)	갖고
기럭아 (기러기야)	기러가
딛고 (디디고)	딛고
엇저녁 (어제저녁)	엇저녁
온갖 (온가지)	온갖

이 7항의 규정은 준말에 대한 것으로서 ‘한맛’과 ‘북맛’의 규정하는 바탕과 방향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므로 본문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우선 ‘한맛’은 ‘제 4장 형태에 관한 것’을 5개 절(節)로 나누고, 그 중의 5절이 ‘준말’ 규정인데, 이 하위 단위로 제 32항에서 40항까지의 6개 항(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제 40항에는 3개의 [붙임]을 붙이어서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북맛’은 ‘제 2장 형태부의 적기’ 다음에 ‘제 7항’에 ‘준말’을 다루었는데, 아주 잘못된 규정으로 그치고 말았다.

우선 ‘북맛’의 규정은 ‘형태부의 소리가 줄어진 경우’라고 막연하게 규정하였다. 형태부에는 ‘첫소리, 가운데소리(홀소리), 끝소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첫소리가 줄어들 경우도 있고, 가운데소리가 줄어들 경우도 있겠고, 끝소리 즉 받침이 줄어들 경우도 있으며 형태부 단독으로는 존재하던 소리가 토씨나 어미 또는 형태부와 형태부끼리 연결할 때에 줄어진 경우 등이 있어 그 환경적 차이가 다양한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예문으로 6개 단어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갖가지’는 ‘가지 가지’의 동일한 두 형태소의 앞 형태소의

둘째 소리마디 (syllable) 의 홀소리가 줄고 닿소리만 남은 경우이고, ‘엇저녁’은 두 개의 입자씨의 앞 형태소의 둘째 소리마디의 홀소리가 줄어들고 첫소리만 남은 경우이며

‘갓고’와 ‘덜고’는 한 형태소 (풀이씨의 줄기 중 끝소리마디 (final syllable)) 의 홀소리가 줄고 첫소리만이 남아서 앞소리마디의 끝소리로 쓰인 경우이고

‘기력아’는 입자씨와 토씨의 두 형태소 중 앞 형태소의 끝소리마디의 홀소리 ‘ㅣ’가 줄고 나머지 ‘ㄱ’이 둘째소리마디의 끝소리 (받침) 으로 쓰인 것이고

‘온갓’은 매김씨 형태소와 입자씨 형태소가 어우른 형태인데 뒤 형태소 ‘가지’가 준 것으로 ‘갓가지’의 경우와 같다. 이렇게 따져 보면 제 7 항에는 5 개의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항에다 두서없이 배열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마땅히 ‘한맛’의 경우와 같이 유형별로 갈라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조문은 ‘한맛’에서와 같이 갈라서 규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줄로 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킬 소지를 남기어 놓게 되는 것이다. 특히 맞춤법의 규정이 표준어와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북맛’에서는 이 규정 이외에 제 12 항과 13 항에 걸쳐 준말의 규정이 있는데, 하나의 준말이란 유형을 두 군데로 갈라서 규정한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규정을 제정하는 원리에 어긋난다. 더욱이 ‘괴다’ (물이 괴다 따위) 는 ‘한맛’에서는 ‘괴다’가 표준말인데 ‘북한’에서는 ‘고이다’를 표준 삼았다. 이것은 남한의 ‘본말’이 북한의 준말이 되는 결과인데, ‘괴

어'가 줄어서 '괘'(물이 괘 있다)는 남한에서는 준말인데 북한 기준으로는 준말의 준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하여는 물론 표준어 규정에서 다룰 문제이나 준말 조항에서도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이 규정은 규정으로서 너무 허술하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요청되는 것이다.

(5) 제 3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

'북말'의 규정은 제 8장에서 제 13장까지를 세부적인 절을 생략한 채 6개 항으로 나누었다. '한말'의 제 4장의 제 1절에서 제 2장까지, 14항에서 18항까지의 규정을 이 8~13항 안에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는데, 두드러진 차이는 '남말'에서는 체언과 조사를 14항에, 어간과 어미를 15항~18항에 나누어서 규정한 것인데 '북말'에서는 이를 뒤섞어서 구별하지 않고, 체언과 용언의 어간을 말줄기란 용어 아래 하나로 묶고, '한말'의 조사와 어미를 '토'라는 용어 아래 하나로 묶어서 이것들의 음성적이나 형태적 공통점을 잣대로 삼아서 유형별로 항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우선 제 8항에서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제 8항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 같다, 같으니, 같아, 같지
 낳다, 낳으니, 낳아, 낳지
 삶다, 삶으니, 삶아, 삶지
 집이, 집을, 집에

팔이, 팔을, 팔에

흙이, 흙을, 흙에

입다, 입으니, 입어, 입자

이 규정에서 ‘북맞’의 ‘말줄기’는 ‘한맞’의 뿌리(root)에 해당하고, ‘토’는 ‘한맞’의 토씨와 줄기(stem)에 해당한다고 보고 설명을 계속하기로 한다. ‘한맞’에서는 체언과 조사가 어울릴 경우에는 제 14 항에서 규정하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어울릴 경우에는 제 15 항에서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맞’의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 경우와 ‘한맞’의 체언과 토씨, 용언이 어간과 어미가 어울릴 경우에 그 본디의 형태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데에는 완전 일치한다. 다만 남한과 북한과의 말본 체계의 차이에서 많은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즉, 남한에서는 ‘체언’과 토씨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토씨를 한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마치 남한에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한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근본적인 말본 체계의 차이에서 ‘한맞’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관계는 14 항에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15 항에서 분리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북맞에서는 이것들을 제 8 항에서 통합 처리하였다. 이러한 문법적 체계의 차이에서 항의 설정 기준이나 설명을 하는 기본 단위가 달라지게 되어 비교 검토하기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맞춤법의 통일이나 그 체계의 일치를 꾀하기 위하여서는 그 선행조건으로 말본에 대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9 항 오늘날 말줄기에 토가 붙은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들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음음)	(그름)
례 : 고치다	곧히다
나타나다	날아나다
바라보다	발아보다
바치다	받히다
부러지다	불어지다
사라지다	살아지다
자라나다	잘아나다
자빠뜨리다	잡바뜨리다

말줄기에 토가 붙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뜻이 판 단어
로 바뀐것은 그 말줄기와 토를 밝히지 않는다.

(음음)	(그름)
례 : -드러나다	들어나다
스무나문	스물남은
쓰러지다	쓸어지다
- (열흘)남아	(열흘)남아
(고개)너머	(고개)넘어

이 9 항의 규정은 ‘한맛’의 15 항과 18 항에 맞먹는 규정인데,
국어에서 제일 호변하고 까다로우면서도 중요한 것이 풀이씨의 줄
기와 씨끝 사이에 끼이어 드는 여러 형태소의 형태이다. 이와 같
이 호변하고 복잡한 관계를 규정한 것이 이 9 항의 규정인 만큼
깊은 연구와 정연한 논리가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맞’의 술어 중 ‘토’라는 개념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이르는 것으로써 ‘한맞’의 줄기와 씨끝 사이에 쓰이는 접미사 -이-, -히-, -기-, -리-, -구-, -우-, -추-, -치-, -뜨리-, -업-, -읍-, -브- 등을 모두 토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용언의 어간 다음에 이러한 접미사들이 붙어서 다른 말로 파생할 경우에 이것들이 각 형태소의 변별이 분명한 것도 있고, ‘말다’의 ‘말기다’, ‘웁다’의 ‘웁기다’들과 같이 그러나 불분명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곧다[直]에 -치-가 붙어서 ‘고치다’가 된 말인지를 형태적인 면에서 변별하기 어렵고, ‘곧다’와 고치다[改]와의 관계를 의미 면에서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만일에 형태적 의미적인 면에서 ‘곧다’에서 파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곧치다’로 적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발음대로 ‘고치다’로 적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한데 모아서 표기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9항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두 유형으로 갈라서 설명하였는데, 앞의 것은 ‘말줄기에 토가 붙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뒤의 규정은 뜻이 딴 단어로 바뀐 경우로서 이 두가지 조건이 갖추인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치다’는 ‘한맞’의 22항 ‘다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드러나다, 쓰러지다’ 사라지다들은 ‘한맞’의 15항의 [붙임]의 1.2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열흘)나마’의 ‘나마’는 [붙임]의 (3)의 규정인데, 이것들은 모두

가 밝혀 적지 아니하는 것들이다.

제 10 항 일부 형용사, 동사에서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적에 말
줄기의 끝소리가 일정하게 바뀌어지는것은 바뀐대로 적는다.

여기에서의 ‘말줄기’란 술어는 형용사, 동사 즉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토’는 ‘한맛’의 어미에 해당한다. 토는 어미
뿐만 아니라 체언에 붙는 조사와 어미 앞에 붙어 쓰이는 안맺음
씨끝 곧 선어말어미에도 적용된다.

이 10 항의 규정은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규정으로 용언의 줄
기와 씨끝이 어울릴 적에 용언의 끝소리가 그 본디의 형태를 유
지하기도 하고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있다. 이럴경
우 바뀐 것은 바뀐대로 적으라는 규정이다. 끝소리의 종류가 다르
고 바뀌는 유형이 다르므로 이 규정을 다시 9개 유형으로 갈라
서 설명하였다. 이 규정은 ‘한맛’의 ‘18항’과 맞먹는 것으로
‘한맛’에서도 18 항의 규정을 9개의 유형으로 갈라서 설명한 것
과 완전히 일치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1개 유형씩을 갈라서
설명하기로 한다.

1) 말줄기의 끝을 《ㄹ》로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 잘다 - 갈고, 갈며, 갈아

가니, 갑니다, 가시니, 가오

돌다 - 돌고, 돌며, 돌아

도니, 돕니다, 도시니, 도오

불다 - 불고, 불며, 불어

부니, 봅니다, 부시니, 부오

이 규정은 ‘한맞’의 ‘18항 1’과 맞먹는 것인데, 갈다〔耕磨〕들은 원칙적으로는 ‘ㄹ’ 끝소리를 유지하지만 어미의 첫소리가 ㄴ, ㄷ, ㄹ, ㅁ의 ‘-시-’, ‘-오’의 앞에서는 규칙적으로 줄어 들기 때문에 줄어진 그대로를 적으라는 규정이다.

2) 말줄기의 끝을 《ㅅ》으로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 낫다 - 낫고, 낫지

나으니, 나아

짓다 - 짓고, 짓지

지으니, 지어

잇다 - 잇고, 잇지

이으니, 이어

이 규정은 문법 용어로 ㅅ변칙의 경우인데 어간의 끝소리 ㅅ이 홀소리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줄어진 형태는 본디의 ‘ㅅ’이 있는 형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줄어진 그대로를 적으라는 규정이다. 그러나 벗다〔脫〕, 웃다〔笑〕들은 ‘ㅅ’이 빠지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맞’의 18.2와 맞먹는 규정이다.

3) 말줄기의 끝을 《ㅎ》으로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 벌짚다 - 벌짚고, 벌짚지

벌거오, 벌거니, 벌겁니다

벌개서, 벌거리

커다랗다 - 커다랗고, 커다랗지

커다라오, 커다라니, 커다랍니다, 커다래서

허엿다 - 허엿고, 허엿지

허여오, 허여니, 허엽니다, 허여리

[붙임] 《ㅎ》받침으로 끝난 본래의 말줄기가 두 소리 마디이상
으로 된 형용사, 동사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

조문 설정이나 방법이 ‘한맞’과는 아주 다르다. ‘한맞’에서는

제 18 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
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대로 적는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한 형태소의 끝소리가 어떠한 언어환경에
서 빠지거나 바뀌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형태 중에서 어느 것
이 으뜸이 되는가를 여러 용례를 통하여 검토한다. 그리하여 그것
이 일률적 규칙적으로 바뀌되, 음성적이나 형태적으로 바뀔 만한 환
경이면 우선 그 바뀐 것을 변이형태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으면
바뀐 것이라도 바뀌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 발
음한 것으로 인정하여 언어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그러니까 우선 바뀐 것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인정할 경우에
관하여 이것을 맞춤법의 규정에 반영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는 장
치를 마련한 것이다. 가령 놓다[放]은 어간에 ‘ㅎ’이 있으나 이
‘ㅎ’이 빠지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규정에서 제외된다. 어느

말이든 먼저 잣대를 정하고 그 잣대에 맞추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북맞’의 규정은 규정 자체가 결함이 있다고 하겠다. 이 규정은 모두 용언 중 형용사에 대한 규정이고 형용사 중에서도 본어간에 뒷가지 ‘-영-’이 붙어서 된 것과 ‘-다랗-’이 붙어서 된 길다랗다와 ‘크다’의 줄기에 붙은 접미사 -다랗-이 붙어서 된 말에 국한하였다.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규정의 적용에 많은 의문점이 생기게 될 것이다.

[붙임]으로 덧붙인 말은 원칙 속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4) 말줄기의 끝 《ㄷ》를 《ㄹ》로도 적는 경우

- 례 : 걷다-걸고, 걷지, 걸으니, 걸어
 듣다-듣고, 듣지, 들으니, 들어
 묻다-묻고, 묻지, 물으니, 물어

‘한맞’에서는 ‘ㄷ’ 변칙의 경우이다. 국어의 용언의 어간에 ‘ㄷ’ 끝소리를 가진 말 중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다. 이 변하는 것은 일률적,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이므로 변칙으로 인정하여 바뀐 대로 적는다는 규정으로 ‘한맞’의 ‘18항 5’에 해당한다.

5) 말줄기의 끝 《ㅂ》을 《오(우)》로도 적는 경우

- 례 : 고맙다-고맙고, 고맙지, 고마우니, 고마워
 곱다-곱고, 곱지, 고투니, 고투와
 춥다-춥고, 춥지, 추우니, 추워

이 규정은 ‘남맞’의 ‘18항 6’과 맞먹는 규정으로 ㅂ변칙용언에 해당한다. ‘ㅂ’을 끝소리로 하는 용언 중의 더러는 닿소리, ㄴ, ㄹ, ㅁ이나 홀소리 위에서 ‘-오/우-’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이면서도 규칙성이 있어서 변칙을 인정하고 이것을 맞춤법에서 규정한 것이다.

6) 말줄기의 끝 《ㄹ》를 《르 ㄹ》로도 적는 경우

례 : 누르다 - 누르고, 누르지,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 푸르고, 푸르지, 푸르러, 푸르렀다
 이르다 - 이르고, 이르지, 이르러, 이르렀다

‘한맞’에 ‘18. 8’에 맞먹는 규정으로 어간 다음에 ‘-어’가 와야 할 자리에 ‘-러’로 바뀌어 나는 경우이다. ‘한맞’에서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뀐 것으로 보는 반면에 ‘북맞’에서는 ‘-르’ 다음에 ‘-어’가 놓일 자리에 ‘ㄹ’이 덧붙여가서 ‘ㄹ+어’로 본 것이다. 이럴 경우에 ‘ㄹ’을 무엇이라고 규정짓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7) 말줄기의 끝 《르》를 《ㄹ ㄹ》로도 적는 경우

례 : 기르다 - 기르고, 기르지, 길러, 길렀다
 빠르다 - 빠르고, 빠르지, 빨라, 빨랐다

‘한맞’의 ‘18항 9’와 맞먹는 규정이다. 어간의 끝소리 ‘르’의 ‘-’가 줄고 나머지 ‘ㄹ’이 윗소리마디의 받침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다음에 이어질 ‘어’가 ‘러’로 바뀌는 것으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이형태로 바뀌는 말이다. 이럴 경우 바뀐 대로

인정하여 적는 것이 이 규정의 정신이다.

8) 말줄기의 끝을 《一》로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 고프다 - 고프고, 고프지, 고프, 고프다

부르트다 - 부르트고, 부르터, 부르텨다

뜨다 - 뜨고, 뜨지, 떠, 텨다

‘남맞’의 ‘18항 4’에 맞먹는 규정이다. 어간 ‘으’다음에 어미 ‘-어/아’나 과거를 나타내는 ‘-었/았-’이 뒤따를 경우에는 끝소리 ‘一’가 줄고 ‘-어/아-’나 ‘-었/았-’이 어간의 일부에 녹아 붙어서 ‘고파 고프다’들로 되는데, 이러한 어휘는 그 수가 굉장히 많다.

9) 말줄기의 끝을 《丁》로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 푸다 - 푸고, 푸지, 피, 뵈다

여기에 딸린 낱말은 하나밖에 없어서 ‘한맞’에서는 앞의 8)의 규정과 함께 ‘18. 4’에 통합하여 처리하였다. ‘丁’가 빠지는 경우는 8)의 경우와 같다.

이 10항의 규정은 ‘한맞’의 ‘18항’의 규정을 순서와 설명의 방법을 달리하였을 뿐, 결과는 하나도 다름이 없다. ‘한맞’의 규정의 ‘정신’은 으뜸형태를 정하여 잣대를 삼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데 대하여 ‘북맞’에서는 모두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규정한 점이 다를 뿐이다.

제 11 항 말줄기가 《아, 어, 여》 또는 《았, 었, 였》과 어울릴

적에는 그 말줄기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적는다.

이 규정은 ‘한맞’의 ‘16항, 16항2, 18항7’들과 맞먹는 규정인데, 남한의 술어로는 양성모음 다음에 이어지는 안맺음씨끝이나 씨끝은 줄기의 특성에 맞추어 양성모음으로 적고 줄기의 홀소리가 음성모음인 경우에는 음성모음으로 적는다는 규정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1) 말줄기의 모음이 《ㅏ, ㅑ, ㅓ, ㅕ, ㅗ, ㅛ》인 경우에는 《아, 았》으로 적는다.

례 : 막다 - 막아, 막았다
따르다 - 따라, 따랐다
얹다 - 얹아, 얹었다
오다 - 와, 왔다
오르다 - 올라, 올랐다

‘한맞’의 ‘16항1’에 맞먹는 규정으로 모음조화의 법칙을 규정화한 것이다. ‘한맞’과 ‘북맞’의 규정이 완전 일치한다.

[붙임] 말줄기의 모음이 《ㅓ, ㅜ》인 것이라도 합친말줄기인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 곱들다 - 곱들어, 곱들었다
받들다 - 받들어, 받들었다
올들다 - 올들어, 올들었다

사실 이 규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대응의 관계는 ‘들다’가 바탕이 되는데, 이것은 ‘-’로 끝난 경우이므로 자연히 2)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다. 이것을 [붙임]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말줄기의 모음이 《ㄱ, ㅋ, ㆁ, ㅡ, ㅛ, ㅜ, ㅡ, ㅡ, ㅣ-》

인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 거들다 - 거들어, 거들었다

꺾다 - 꺾어, 꺾었다

넣다 - 넣어, 넣었다

두다 - 두어, 두었다

부르다 - 불러, 불렀다

치르다 - 치러, 치렀다

크다 - 커, 컸다

흐르다 - 흘러, 흘렀다

이 규정은 ‘한맞’의 ‘16항 2’에 맞먹는 규정이다. 말줄기의 소리와 이에 이어지는 -어나 -었-은 그 소리대로 적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가령 ‘거들다’의 거들-에 ‘아’와 ‘어’의 두 소리를 붙여 보면 하나는 ‘거들아, 거들았다’가 되고 하나는 ‘거들어, 거들었다’가 된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거들어, 거들었-’쪽을 택한 것이다.

3) 말줄기의 모음이 《ㅣ, ㅐ, ㅑ, ㅓ, ㅕ, ㅛ》인 경우와 줄

기가 《하》인 경우에는 《여, 었》으로 적는다.

례 : 기다 - 기여, 기었다

개다 - 개여, 개었다

배다 - 배여, 배었다

되다 - 되여, 되었다

쥐다 - 쥐여, 쥐었다

하다 - 하여, 하였다

회다 - 회여, 회었다

이 규정은 두 상반된 규정을 하나로 합친 규정이다. 앞의 규정은 으뜸모음에 ‘ㅍ’이 붙는 경우로서 ‘한맛’에는 이와 맞먹는 규정이 없다. ‘한맛’의 규정의 정신은 우선 어간의 끝소리마디에 ‘ㅍ’이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가 ‘여’로 소리나는 것은, 그 ‘여’는 앞의 줄기의 끝소리 ‘ㅣ’의 음성적 관계 즉 ‘ㅣ + ㅍ = ㅍ여’의 과정에서 ‘여’로 실현된 것이므로 그 본디의 소리 ‘-어’를 기본으로 하여 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남북통일을 전제로 하였을 때 문제의 규정으로서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여야 할 것들이다. 줄기 《하》인 경우는 ‘한맛’의 ‘17항 7’과 맞먹는 규정인데, 그 처리방법에 아무 차이점이 없다. 이것은 형태적 변이형태에 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이 ‘한맛’과 ‘북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여파는 상당히 널리 작용하게 된다. ‘북맛’의 경우 어미가 ‘어’인지 ‘여’인지를 결정짓기 위하여서는 우선 어간의 모음이 ‘ㅣ’나 ‘ㅐ, ㅑ, ㅕ, ㅖ, ㅗ, ㅛ, ㅜ, ㅠ’들로 끝났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번거로운 부담은 글자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없어도 관계없을 ‘그러나’ 규정을 신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말줄기의 끝소리마디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 길다 - 길어, 길었다

 십다 - 십어, 십었다

 짓다 - 지어, 지었다

이 규정은 앞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들과 같이 판이가 붙은 것을 ‘ㄱ’로 적기로 규정한 데에서 오는 병폐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총칙에 “일부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로 되어 있다. ‘길어’의 소리는 ‘kir-ə’로, 십어의 소리는 ‘sim-ə’로, ‘지어’의 소리는 ‘ji-ə’로 밖에 달리 소리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 규정은 사실 필요없는 것이다. 3)의 여러 말들을 ‘ㄱ’로 적는다는 불필요한 규정의 여파가 여기에까지 미친 것이다.

[붙임] 부사로 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말줄기와 토를 같
라 적지 않는다.

(움음)

(그름)

례 : 구태어

구태어

도리어

도리어

드디어

드디어

‘한맛’에서는 ‘구태어’ 하나만을 ‘-ㄱ’로 적고 ‘도리어, 드

디어'는 '-어'로 적기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구태여'는 한자의 '敢'과 맞먹는 낱말로서 그 어원이 불분명하고 풀이씨에서 파생된 근거를 잡을 길이 없으므로 발음대로 적을 것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의 경우는 풀이씨 돌다[回]에서 파생한 것이 분명하니만큼 발음이 '여'로 나는 것은 '이 + ㄱ = ㅋ'로서 '리'의 '이'의 영향을 받아서 동화현상의 결과로 '-여'로 실현될 뿐이고, 본디는 '-어'로 된 것이 분명하므로 어원을 살려서 '-어'로 적기로 한 것이고, '드디어'는 '遂'의 뜻에 해당하는 낱말로서 현재는 잘 쓰이지 않으나 옛 문헌에는 '드되다'의 끝바꿈으로 쓰인 근거가 생생하게 남아 있으므로 '드디어'로 쓸 것을 규정하였다. 이 11항의 규정은 '한맛'과 '북맛'이 전혀 반대로 규정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 12 항 모음으로 끝난 말줄기와 모음으로 시작한 토가 어울릴 적에 소리가 줄어든것은 준대로 적는다.

- 1) { 가지다 - 가지여, 가지였다
 가지다 - 가져, 가졌다
- 2) { 되다 - 되여서, 되었다
 되다 - 돼서, 됐다
 { 하다 - 하여서, 하였다
 하다 - 해서, 했다
- 3) { 개다 - 개여서, 개였다
 개다 - 개서, 겐다
 { 메다 - 메여서, 메였다
 메다 - 메서, 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줄어든대로 적는다.

례: 1) 살찌다 - 살찌, 살졌다

지다 - 저, 졌다

치다 - 처, 쳤다

찌다 - 쪼, 쪼다

2) 건느다 - 건너, 건넜다

잠그다 - 잠가, 잠갔다

치르다 - 치러, 치렀다

크다 - 키, 컸다

쓰다 - 써, 썼다

{ 고이다 - 고이여, 고이였다

괴다 - 괴여, 괴였다

{ 모이다 - 모이여, 모이였다

뒀다 - 뒀여, 뒀었다, 모여, 모였다

{ 보다 - 보아, 보았다

보다 - 봐, 봤다

{ 주다 - 주어, 주었다

주다 - 줘, 줬다

{ 꾸다 - 꾸어, 꾸었다

꾸다 - 꾸, 꼈다

{ 뜨다 - 뜨이다, 뜨이여, 뜨이였다

뜨다 - 띄다, 띄여, 띄었다

{ 쏘다 - 쏘아, 쏘았다

쏘다 - 쏘, 쏘다

{ 쏘이다 - 쏘이여, 쏘이였다

쏘다 - 쏘여, 쏘였다

{ 쓰다 - 쓰이다, 쓰이여, 쓰이었다
 쓰다 - 씌다, 씌여, 씌었다
 { 쪼이다 - 쪼이여, 쪼이었다
 쪼다 - 쪼여, 쪼었다

3) 가다 - 가, 갔다

사다 - 사, 샀다

서다 - 서, 섰다

켜다 - 켜, 켜다

이 규정은 기본 규정을 세부 분류로서 3개 부문으로 나누었고 ‘그러나’ 규정도 3개 부문으로 갈라서 설명하였다. 전체로 보아 준말에 대한 규정인데, ‘한맞’의 규정과 결과적으로 같은 것도 있다. 이 중 ‘한맞’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는 용언의 어간의 끝모음이 ‘ㄱ, ㅌ’로 끝난 말들인데, 이런 말은 줄어들더라도 어미의 ‘-어/아’ 형태에 변동이 없이 동일하게 발음되므로 달리 규정할 근거가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한북맞’이 동일한 형태로 통일되게 된 것이다.

다음에 어간의 끝 음절이 [|]나 [|]가 후행하여 이루어진 ‘괴다, 췌다, 쪼다’들은 두 가지 면에서 ‘한맞’과 정반대이다. 첫째, 남한에서는 이것들의 표준말을 ‘괴다, 췌다, 쪼다’들로 정하였는데, ‘북맞’에서는 ‘고이다, 쏘이다, 쪼이다’들을 표준말로 정하였다. ‘한맞’에서는 표준말의 끝모음이 ‘ㄷ’로 끝난 것이므로 ‘고이다, 쏘이다, 쪼이다’들의 맞춤법은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연히 제외되었다. 그러나 ‘북맞’에서는 어간의 끝 음절이 ‘이’

로 끝난 것을 표준 삼았기 때문에 [|]나 이 [|]가 후행하여 이루어진 ‘개, 깨, 니, 기……’ 다음에서는 ‘어’를 ‘여’로 적기로 규정하였으므로, 맞춤법에서도 차이가 생기어 결국 표준말과 맞춤법의 두 측면에서 모두 ‘한맞’과 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규정은 준말에 대한 맞춤법 규정인데, 이 규정은 ‘건너다’를 제외하고는 ‘한맞’과 동일하다. ‘한맞’에서는 ‘건너다’를 표준말로 정한 반면, ‘북맞’에서는 ‘건느다’를 표준 삼았다. ‘건느다’를 표준 삼으면 ‘一변칙’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인 맞춤법은 같더라도 법칙 적용에는 차이가 있다. 가령 ‘건너’를 예로 들면 ‘한맞’의 표준말에서는 ‘건너어’의 준말인데, ‘ㄱ’가 겹친 까닭에 어미 ‘-어’가 준 것으로 설명한다. 마치 ‘가다’의 활용형 ‘가아’의 ‘아’가 겹친 것이므로 어미 ‘-아’가 줄어서 ‘가’만 남은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북맞’에서는 건느다의 어간 ‘건느-’가 어미 ‘-어’와 연결되면 ‘느’의 ‘一’가 줄고 어미 ‘-어’가 ‘ㄴ’과 직결되어 ‘건너’의 형태로 된다고 설명할 것이다. 마치 ‘끄다→껴, 뜨다→떠, 쓰다→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문법의 체계 문제로 들어가서 설명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이 12항의 규정은 ‘한맞’의 제 35항의 기본 규정과 [붙임] 1, 2의 규정, 제 36항의 어간의 끝음절이 [|]로 끝난 낱말의 표기 규정들과 맞먹는 규정으로 표준말이나 맞춤법의 규정에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앞으로의 깊은 연구와 ‘한맞’과 ‘북맞’ 사이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

제 13 항 말줄기의 끝소리마디 《하》의 《卜》가 줄어지면서 다음에 온 토의 첫소리 자음이 거세게 될 때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례 : 가하다	가타
다정하다	다정타
례하건대	례컨대
발명하게	발명케
신선하지 못하다	신선치 못하다
시원하지 못하다	시원치 못하다

그러나 《아니하다》가 줄어든 경우에는 《않다》로 적는다.

(본말)	(준말)
례 : 녀긱하지 못하다	녀긱치 않다
서슴지 아니하다	서슴지 않다
주저하지 아니하다	주저치 않다

[붙임] 이와 관련하여 《않다》, 《못하다》의 앞에 오는 《하지》를 줄인 경우에는 《치》로 적는다.

례 : 고려치 않다, 팬치 않다, 녀긱치 않다, 만만치 않다,
 섭섭치 않다, 편않치 못하다, 풍부치 못하다, 똑똑치
 못하다, 우연치 않다

이 규정은 으뜸 규정과 그러나 규정, [붙임]규정의 3개 부문으로 짜여졌는데, ‘한맞’의 40항과 맞먹는 규정이다. 그 으뜸 규정은 ‘한맞’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그러나’ 규정에서

녀녀지 않다 (한맞 제 40 항 [붙임])
 녀녀하지 않다
 녀녀치 않다 (북맞 제 13 항 [붙임])

이것은 ‘북맞’이 잘못이다. 실지의 발음이 ‘녀녀치’로 나지 않는다. 나지 않는 발음을 기본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 4 장 합친말 적기

합친말은 ‘한맞’의 합성어에 해당하는 슬어로서 어근과 어근이 합하여 한 낱말을 이룬 것을 말한다. 한맞의 ‘제 4 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이 이 장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두 어근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소리가 변하는 것을 변한 대로 적을 것인지 본디 소리대로 적을 것인지를 규정한 장으로 14 항에서 18 항까지에 걸쳐 규정하였다.

제 14 항 합친말은 매개 말뿌리의 본래 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 1) 견잡다, 낮보다, 눈웃음, 돌보다, 물오리, 밤알, 손아귀, 철없다, 꽃철, 끝나다

2) 값있다, 걸늬다, 몇날, 빛나다, 칼날, 팔알, 훑내

그러나 오늘날 말뿌리가 뚜렷하지 않은것은 그 본래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례 : 며칠, 부랴부랴, 오라버니, 이틀, 이태

이 규정은 ‘한맞’의 제 27 항 합성어 및 파생어의 규정과 제 57 항과 맞먹는 규정으로 한맞의 규정과 일치한다. 다만 북맞

의 술어 합친말은 ‘한맛’의 합성어에 해당하나 ‘매개 말뿌리’란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 이 은정(1989:25~47)에 의하면 말뿌리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매개 말뿌리’에 대한 설명은 없다. 본문은 밝혀 적는 규정이고, ‘그러나’의 규정은 밝혀 적지 않는 규정으로 이것도 한맛의 규정과 같다.

제 15항 합친말을 이룰적에 《ㅂ》이 덧나거나 순한소리가 거센 소리로 바뀌어나는 것은 덧나고 바뀌어나는대로 적는다.

례 : 마파람, 살코기, 수캐, 수돼지, 좁쌀, 휘파람, 안팎

[붙임] 소리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

례 : 셋별-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비바람(비와 바람)

이 규정은 두 낱말이나 형태소가 모이어 하나의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 ‘ㅎ’소리나 ‘ㅂ’소리가 덧나거나, ‘ㅎ’소리의 개입으로 건센소리가 날 때의 적기 규정으로 ‘한맛’의 ‘제 31항의 1,2’를 한데 합한 규정이다. 으뜸 규정은 ‘한맛’의 규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만 붙임조항을 덧붙였다.

이 붙임 규정은 앞의 으뜸 규정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낱말인데, 어째서 이 [붙임] 규정에 넣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앞의 으뜸 규정은 ‘좁쌀’을 제외하고는 모두 ‘ㅎ’소리가 개입되어 거센소리(aspiration)가 되는 경우이고, ‘좁쌀’의 경우는 ‘조[粟]’와 밭[米]의 합성어로서 두 말사이에 [ㅂ]소리가 난

다. 그런데 된소리로 발음되는 규정을 [불입]으로 넣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이 남한에서는 ‘비바람’이 한 ‘날말’로서 ‘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과 ‘비와 바람’을 동시에 나타내는데, ‘북맞’에서는 ‘비바람’과 빗바람 → 비빠람을 분리시키고, 이것의 적기를 위하여 [불입]조항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 말은 제 18 항에 들어가야 할 날말인 것이다.

제 16 항 합친말을 이룰 적에 빠진 소리는 빠진대로 적는다.

례 : 다달이, 마소, 무넘이, 부나비, 부넘이, 부삽, 부손, 소나무, 수저, 화살, 여달이

이 규정은 ‘한맞’의 28 항의 규정과 맞먹는데, 전체를 살펴 보면 모두가 앞의 날말의 끝소리 [ㄹ]이 빠진 데 대한 적기 규정으로 ‘한맞’의 ‘ㄹ 소리가 날 경우에 나지 않는 것으로’라고 명기한 것이 더욱 분명한 규정이라 하겠다.

제 17 항 합친말에서 앞말뿌리의 끝소리 《ㄹ》이 닫김소리로 된 것은 《ㄷ》으로 적는다.

례 : 나흔날, 사흔날, 선달, 순가락, 이튼날

이 규정은 ‘한맞’의 제 29 항의 규정과 맞먹는 규정인데, 어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ㄷ’ 대신 ‘ㅅ’으로 적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하여 규정대로 명문화한 것이다.

제 5 장 . 앞붙이와 말뿌리의 적기

이 장에는 18항 하나만이 딸리어 있는데, ‘한맞’의 ‘30항의 1~3’까지를 두루 뭉쳐서 한 항(項)으로 규정하였다. 제 18항의 전문을 소개하고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제 18항.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본래 형태를 밝혀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 -갓풀, 덧신, 뒷일, 만누이, 선웃음, 참외, 햇가지, 아랫집, 옷집, 옛말
-빋보다, 싯허엿다, 짓밟다, 헛디디다

이 규정은 한 마디로 너무 소략하다. ‘앞붙이’라는 개념을 ‘한한’의 술어의 접두사(prefix)에 대응시킨다면, ‘갓, 뒤, 만, 아래, 옷(북한에서 위가 아닌 ‘우’를 문화어로 선택하였다), 옛’, 들은 입자씨로 된 어근이므로 접두사가 아니다. 이런 견해에서는 맞춤법의 적기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문법 체계의 확립에는 앞으로 많은 문젯점이 야기될 것이다.

제 6 장 말뿌리와 뒤 붙이(또는 일부 토)의 적기

이 6장에는 제 19항에서 제 24항까지를 포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앞의 낱말은 입자씨 혹은 풀이씨의 줄기이고, 뒤에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파생어를 규정한 장(章)이다. ‘한맞’의 제 16항에서 28항까지를 뒤섞어서 이 장에 포함시키었다. 제 19항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제 19항 자음으로 시작한 뒤불이가 말뿌리와 어울릴 적에는 각각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을 다시 1)~5)의 다섯 유형으로 갈라서 규정하였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1개 유형씩을 끊어서 풀이하도록 한다.

1) 새 단어를 새끼치는 뒤불이

예 : - 끈추, 날치, 덮개, 돋보기, 셋째, 앞사귀

- 꽃답다, 뜯적뜯적하다, 외롭다

이 규정은 상당히 모호한 표현으로 시종되었다. '새 단어를 새끼치는 뒤불이'라고 하였는데, 2)~5)도 모두 으뜸되는 말에 뒤불이가 붙어서 새끼친 말이다. 그렇다면 1)의 하위 단어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등한 위치에서 처리하였다는 것도 모순이고, '돋보기'의 '보기', '셋째'의 '째'는 불완전 명사로 볼 수 있는 말들이다. 그리고 '세째'와 '셋째'의 두 형태가 있는데 그 의미내용이 약간 다르다. 적기의 방식은 '한맛'과 같지마는 문법적인 견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겠다.

2) 동사의 사역, 피동의 기능을 나타내는 《이, 히, 기, 리, 우, 구, 추

예 : 감기다, 걷히다, 놓이다, 담기다, 돋구다, 막히다, 맞추다, 말기다, 살리다, 세우다, 꽃히다, 뽑히다, 앉히다, 옮기다, 웃기다, 익히다, 입히다

이 규정은 '한맛'의 22항의 규정과 동일한데 보기만 약간 바

꾸어 놓았을 뿐이다. 이 중에서 ‘돋구다’는 ‘남한’에서는 ‘돋우다’를 표준말로 정하였고, ‘세우다’는 ‘세우다’ 이외에 달리 혼동하여 쓸 소지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기이다.

3) 힘줄을 나타내는 《치》

례 : 놓치다, 덮치다, 받치다, 뺏치다, 엮치다

이 규정은 ‘한말’의 ‘제 22항. 2’와 맞먹는 규정으로 그 처리 규정도 완전 일치하여 흠잡을 데가 없다.

4)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추》, 《히》

례 : - 낮추다, 늦추다

- 굳히다, 넓히다, 밝히다

‘한말’의 제 22항과 맞먹는 규정인데, ‘한말’에서는 피동이나 사역으로 만들거나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등의 조어 형성 과정은 문제 삼지 않고, 다만 어간이나 어근에 해당되는 소리가 붙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한 단위의 잣대로 하여 적기를 규정한 점이 다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적는 규정은 일치하다.

5)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로 될 수 있는 말뿌리와 어울리

부사를 만드는 뒤붙이 《히》

례 : 넉넉히, 답답히, 미끈히, 꾸준히, 똑똑히, 빠히, 씨원히

이 규정은 ‘한말’의 제 25항에 해당하는 데, ‘한말’에서는 뒷가지 ‘히’ 이외에 ‘이’가 붙을 경우와, ‘하다’가 붙지 않고서 부사로 된 말까지를 규정한 점이 다르다. 그리고, 보기 중에

‘씨원히’는 ‘시원하다’의 어근에 ‘히’가 붙어서 된 말인데, ‘북한’에서는 ‘씨원하다’를 표준말로 정한 듯하다. 이 말은 문화어 발음에서 재론하겠다.

제 20 항 말뿌리와 뒤붙이가 어울려 파생어를 이룰 적에 빠진 소리는 빠진 대로 적는다.

례 :가으내, 겨우내, 무질(물속에 잠기는 것), 바느질

이 규정은 제 16 항과 ‘ㄹ’이 빠진 경우에 빠진 대로 규정한 점은 동일하다. 다만, 16 항은 어근과 어근이 어울리어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이 항은 어근에 접미사가 어울리어 이루어진 파생어일 따름이다. 이런 근거에서 ‘한말’에서는 이 두 항을 한데 묶어 제 28 항에서 처리하였다. 맞춤법 규정인 까닭에 ‘ㄹ’이 빠진 것과 안 빠진 것이 병행하여 쓰이거나, 어원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빠진 대로 적을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결과가 합성어나 파생어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사실을 두 항으로 갈라서 처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제 21 항 《ㄹ, ㄹᄇ, ㄹᄃ, ㄹᄆ》 등의 둘받침으로 끝난 말뿌리에 뒤붙이가 어울릴 적에 그 둘받침 중의 한 소리가 따로 나지 않는 것은 안 나는 대로 적는다.

례 :말끔하다, 말쑥하다, 실쭙하다, 할쭙할쭙하다, 알팍하다.

이 규정은 어원을 밝혀 적을 것이냐, 실현된 발음대로 적을 것이냐를 규정한 항으로서 ‘한말’에서는 ‘제 21 항. 2’의 ‘다만’,

조항으로 처리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말끔하다’의 궁극적인 어원은 맑다[淸]의 어간 ‘맑’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어원을 따지자면 ‘말끔하다’로 적는다는 이론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원에서 멀어졌으면서, 그 뜻도 본디의 뜻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밝혀 적지 않기로 규정한 것이다. ‘한맛’에서는 ㄱ, ㄴ……들을 흘받침 ㄱ, ㄴ……들을 쌍받침, ㄹ, ㄹᄇ……들을 겹받침으로 부른다.

제 22 항 말뿌리와 뒤불이가 어울리어, 아주 다른 뜻으로 바뀐 것은 그 말뿌리와 뒤불이를 밝혀 적지 않는다.

예 : 거두다, 기르다, 도리다, 드리다, 만나다, 미루다, 부치다,
이루다

이 규정도 어근에 접미사나 다른 요소가 붙어서 그 어원 자체를 알아 보기 힘들거나 뜻이 아주 멀어진 것은 발음대로 적는다는 규정으로 ‘한맛’의 22 항과 맞먹는다.

제 23 항 모음으로 된 뒤불이가 말뿌리와 어울릴 적에는 다음과 같이 갈라 적는다.

이 규정은 조건만을 큰 벼리로 제시하였다. 즉

첫째는 말뿌리 다음에 어울리는 조건

둘째는 모음으로 첫소리를 삼는 뒤불이가 이어지는 조건

이 두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그 어울리는 환경에 따라 밝혀 적는 경우와 밝혀 적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양

분하여 규정하였다.

1)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 적는 경우

앞의 큰 버리에서 규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밝혀 적어야 할 환경적 조건을 6개 조건으로 갈라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6개 조건이 명사, 부사, 형용사 등이 바탕이 되어 있다.

(1)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뒤붙이 《이》

례 : ① 길이, 깊이, 높이, 미닫이, 벼훤이, 살림살이, 손잡이, 해돋이

② 네눈이, 삼발이

③ 같이, 굳이, 깊이, 많이, 종이

④ 곳곳이, 날날이, 살살이, 집집이

그러나, 본딴말에 붙어서 명사를 이루는 것을 밝혀 적지 않는다.

례 : 누더기, 더퍼리, 두드러기, 무더기, 매미, 깎두기, 딱따기

이 규정은 입자씨나 풀이씨의 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었을 경우에는 그 ‘이’를 밝혀 적는다는 것으로 ‘한맞’의 19항과 20항에 해당된다. ‘한맞’에서는 입자씨와 토씨, 풀이씨의 어간과 어미를 엄격히 갈라서 규정하는데 ‘북맞’에서는 뒤섞어서 규정한 차이가 있다. 이 보기의 ①③은 용언에 관한 것이고, ②④는 명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조항은 ‘한맞’의 ‘23항과 붙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성어와 의태어의 규정인데, 이것은 북한에서는 ‘본딴말’이란 술어를 썼다. 즉 앞의 규정과 같은 조건이 갖

추이었더라도 의성어나 의태어의 경우에는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명사를 만드는 뒷붙이 《음》

례 : 값음, 걸음, 믿음, 죽음, 꽃묶음, 엮음, 웃음, 이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말뿌리와 뒷붙이를 밝혀 적지 아니한다.

례 : 고름 (고름을 짜다)

마름 (한마름 두마름)

주검 (주검을 다루다)

이 규정은 ‘남맞’의 제 19항에 맞먹는 규정으로 규정의 정신과 결과가 같다.

(3) 동사의 상을 나타내거나,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이》

《우》 《으키》 《이키》 《애》

이 규정은 ‘한맞’의 제 22항. 1에 맞먹는 규정으로 적기의 규정이 완전 일치한다. ‘한맞’의 용어로는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가 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맞’에서는 ‘상을 나타내거나’로 되어 ‘상’이란 말을 쓴 점이 다르다.

(4)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로 될 수 있는 《ㅅ》 받침으로

끝난 말뿌리와 어울려서 부사를 만드는 뒷붙이 《이》

례 : 반듯이 (반듯하게 펴놓다), 꽃꽂이, 깨끗이, 따뜻이, 뚜렷이,

빵긋이, 뿌듯이, 어렴풋이

이 규정은 ‘깨끗이, 어렴풋이’들은 ‘한말’의 ‘제 25 항.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히’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한말’의 제 51 항의 규정으로 어느 하나의 틀에 넣어 규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 6 장 그 밖의 것’에서 한꺼번에 다룬 것이다. 가령 ‘깨끗이, 따뜻이’들은 ‘깨끗치, 따뜻치’들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한 규정이고 ‘반듯이’는 ‘必’의 뜻을 지시하는 ‘반드시’와 구별하기 위하여 ‘正’의 뜻을 지시하는 반듯하게 → 반듯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이다.

(5) 형용사를 만드는 《없》

례 : 객없다, 덧없다, 부질없다, 시름없다

이 규정은 사실 불필요한 것이다. 이 말의 짜임새로 보아, 어근과 어근이 합한 합성어이지 파생어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는 접미사와 어근과의 개념 규정이 모호한 것 같고, 활용면에서도 덧없이, 덧없고, 덧없게 들과 같이 끝바꿈하는 것을 굳이 조문화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6) 《거리》와 어울릴 수 있는 말뿌리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뒤붙이 《이》

례 : 반짝이다, 번득이다, 번쩍이다, 속삭이다, 움직이다

이 규정은 ‘한말’의 제 24 항에 맞먹는 것으로 이런 말은 ‘속사기다, 반짝기다……’들로 발음된다. 그러나, ‘반짝거리다, 반짝반

작하다' 들이 붙는 것으로 보아 어원이 분명하므로 밝혀 적기로 규정한 것이다.

2)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 적지 않는 경우

앞의 1)과는 정반대로 적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말뿌리+모음으로 된 뒤붙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이 2)의 규정은 뒤붙이의 성질에 따라 밝혀 적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그 경우는 다음의 3개 조건이 갖추인 경우이다.

(1) 말뿌리에 《이》《음》 이외의 뒤붙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명사나 부사

례 : ① 나머지 마감, 마개, 마중, 바깥, 지붕, 지푸래기, 끄트머리, 뜨더귀, 싸래기, 쓰레기, 올가미

② 너무, 도로, 바투, 비로소, 자주, 뜨덤뜨덤

③ 거뭇거뭇, 나뭇나뭇, 쫘긋쫘긋, 오긋오긋, 울긋불긋

이 규정은 '한맞'의 제 19 항. 4 [붙임]의 (1), (2), (3)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똑 같은 어근에 똑 같은 접미사가 붙을 경우라도 '이, 음'이 붙은 경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모든 어휘에 두루 붙을 수 있으므로 이 보편성과, 규칙성을 감안하여 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편성과 규칙성이 결여하여 특수한 낱말의 특수한 경우에만 쓰이므로 밝혀 적지 않는 것이다. 같은 맞다[迎]에서 파생하였으나, '-이'가 붙은 '맞이'는 보편성이 있어서 밝혀 적기로 규정하고, '-음'이 붙은 맞음,

‘-우’가 붙은 ‘맞우’는 밝혀 적지 않기로 한 것이 좋은 본보기이다.

(2) 어떤 토나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말
뿌리에 뒤붙이 《이》 《애기》 《어기(예기)》 《아기》가 붙
어서 된 명사나 부사

례 : 갑자기, 동그라미, 반드시, 슬며시, 흐르래기, 부스레기

이 규정은 조어 상에 그 특질을 달리하는 낱말들을 ‘하다’가 붙지 않는다는 막연한 조건에 흡수한 잡탕 규정이다. ‘한맞’에서는 ‘동그라미, 부스레기’들은 제 23 항에, ‘갑자기, 반드시, 슬며시’들은 제 25 항에 분속시키어 그 짜임새에 따른 적기 규정을 분명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나, 규정의 제정 정신이나 방법은 산만할지라도 적는 규정은 동일하다. 이것은 맞춤법의 규정 문제라기보다 문법 체계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남북 통일을 전제하였을 때 이런 문제들은 많은 토의와 연구를 거쳐서 귀일시키어야 할 것이다.

(3) 뒤붙이 《왕, 왕》 또는 《업》, 《읍》이 붙어서 이루어진
형용사

례 : 가왕다, 간지럽다, 누렇다, 동그렇다, 미덥다, 밟잖다, 부드럽다,
시끄럽다, 징그럽다, 파랗다, 싸느랗다, 어지럽다, 우습다

이 규정도 규정으로서의 체계가 서 있지 않다. 본문에 《왕, 왕》을 한 묶음으로, 《업, 읍》을 다른 한 묶음으로 단위를 삼아 규정하였다면 례 :의 여러 낱말도 이 규정에 따라 배열하여야 할 터

인데, ㄱ, ㄴ……순서에 따라 뒤섞어 배열하였다. 적어도 맞춤법의 헌법이 라고 할 만한 중요한 규정을 이렇게 무체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규정은 ‘한맞’에서는 《양, 영》계통은 제 18항에, 《업, 읊》계통은 제 22항에 자세히 규정하여 놓았다. 적기의 원칙은 ‘한맞’ ‘북맞’이 모두 같다. 다만 ‘싸느랴다’는 좀 문제가 있는 낱말이다.

제 24 항 부사에서 뒤붙이 《이》나 《히》가 그 어느 하나로만 소리 나는 것은 그 소리대로 적는다.

이 규정은 ‘한맞’의 ‘제 51항의 1, 2, 3’과 맞먹는 규정으로 어근에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에서 번져서 된 것, 어근의 끝음절의 받침이 ‘ㅂ’으로 끝나는 말 중의 ㅂ 변칙에 속하는 것, 입자씨가 겹치면서 ‘이’나 ‘히’ 소리로 나는 것들을 줄여서 ‘이’로도 발음하고 ‘히’로도 발음하는 것을, 그 어원이나 특질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으로만 쓸 것을 규정한 항이다.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만 발음되어 혼동할 여지가 없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 《히》로 적는 것 (주로 하다를 붙일 수 있는 것)

례 : 고요히, 덩덤히, 마땅히, 번번히, 지극히, 뻔히

이 규정은 어근에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 부사로 될 경우에는 그 접미사가 ‘-히’가 붙는 것이 상례이고, 또 ‘하’로만 소리 나는 것들로서 어원을 염두에 두고 ‘-이’로 적을 혼동

을 피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정이다.

2) 《이》로 적는 것 (주로 《하다》를 붙일 수 없는 것)

례 : 간간이, 고이, 거어이, 객적이, 빨빨이, 짹짹이

이 규정은 좀 영성하게 제정되었다. ‘간간이, 빨빨이, 짹짹이’는 어원적으로 보아서는 입자씨가 겹쳐지면서 뒷가지 ‘이’가 붙어서 된 말인데, ‘북한말’에서는 ‘간간히, 빨빨히, 짹짹히’ 들로 발음되는지 알 수 없으나, 남한 기준으로는 ‘히’와 ‘이’로 혼동하여 발음되는 일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를 규정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이고, ‘고이’는 ‘곱다’의 끝바꿈꼴이고, ‘객적이’는 ‘객적다’의 끝바꿈꼴인데, 과연, ‘객적히’로 혼동되는지도 의문이다.

3) 말뿌리에 직접 《하다》를 붙일 수 없으나, 《히》로만 소리 나는 것은 《히》로 적으며, 말뿌리에 직접 《하다》를 붙일 수 있으나 《이》로만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는다.

례 : - 거연히, 도저히, 자연히, 작히

- 큼직이, 뚜렷이

이 규정은 1) 2)와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 규정의 조건으로 《하다》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모아졌는데, 그렇다면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을, 세 구분하여 ‘히’로만 발음되는 말, ‘이’로만 발음되는 말, ‘이’와 ‘히’가 혼동되는 말로 구분하고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은 붙

지 않는 말의 성질에 따라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2)에 딸린 여러 낱말은 본디부터 ‘하다’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말을 ‘하다’와 결부시킨 것도 여간 어색하지 않다. 앞으로 많은 시정을 요하는 규정이다.

제 7 장 한자말의 적기

한자말에 대하여 “북맞”에서는 제 25 항에서 제 27 항까지 3개 항에 걸쳐서 규정하여 있다. 그러나 “한맞”에서는 한자말도 국어 가운데의 외래어 중의 하나이므로 이것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어의 각 해당 항에 넣어서 처리하였다. 이 한자말 적기의 규정중 “한맞”과 크게 다른 점은 두음에서 “ㄹ”소리와 “ㄴ”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 25 항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 국가 여자, 뇨소 당, 락원, 로동, 레외 친리마, 풍모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한자말은 변한 소리대로 적는다.

(음음)	(그름)
궁냥	궁량
나사	라사
나팔	라팔
류월	륙월
시월	십월
오뉴월	오류월, 오륙월
요기	료기

“한맞”에서는 1933년 한글 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할 당시, 하나의 한자를 여러 가지로 적던 구습을 교정하여 통일된 적기를 시도할 목적으로 한자의 적기 규정을 설정하였으나, 그 뒤에 한자의 적기는 완전 통일되어, 이러한 한자 적기의 규정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전면 삭제하고, 다만 한 글자가 놓이는 환경에 따라 여러 소리로 발음될 때에 한하여 이것을 “제 52 항”에서 규정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북맞”에서는 새삼 한자말의 적기를 규정하였는데, 그 취지가 “한맞”과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안에서도 많은 모순과 불통일이 발견된다.

첫째 원칙의 규정에서 두음으로 쓰이는 라, 러, 로……들의 한자음은 “나, 너, 노……”로 적고, “라 러 료”……들의 한자음은 야, 여, 요……로 적으며, 한맞 “제 11 항”의 규정, 나, 너, 노 …”들을 두음으로 가진 한자음은 “야, 여, 요”……들로 적기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북맞”의 이 규정에서는 이들 한자말을 모두 라, 러, 로, 나, 너, 노……”들로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 규정중 “풍모”는 한자만 “風”에 대한 적기 규정이라면 “풍모”이외에 달리 적을 여지가 없는 것까지를 ‘례’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그러나”규정에서 “궁냥”은 옳고 “궁량”은 잘못이라는 어례에 대하여는 많은 모순이 있다. 유 목상(1989:62)은 “궁량”을 한자말 “局量”을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현되는 발음은 局量도 Kugriag’ 이고 궁냥도 Kugpiag이며, 국어의 발음 규칙에서는 기이나 o + riag 이면, 예외 없이 ‘gpiag’으로 발음되는데 유독 국량[局量]만을 “궁량”으로

적기로 규정한 것은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나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자의 주음이 없이 알 수 없으나, “螺絲”와 “羅紗”의 두 낱말이 있는데, 어느 것을 “나사”로 적으라는 것인지 혹은 둘다 “나사”로 적으라는 규정인지 알기 힘들다. 하나의 규정을 이러한 모호하거나 모순된 논리로 전개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할것이다.

제 26 항 한자말에서 모음 《ㄷ》가 들어 있는 소리마디로는 《계》《레》《혜》《예》만을 인정한다.

례 : 계산, 계획, 레철, 레의, 실레, 세계, 혜택 연예대, 은혜, 예술
예지, 예약

그러나, 그 본래 소리가 《계》인 한자는 그대로 적는다.

례 : 게시판, 게재, 계양대

이 규정은 “한맞”의 “제 8항”과 그 “다만”규정중 두음으로 실현되는 “레철, 레의”만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 규정의 정신은 “ㄱ, ㄹ, ㅁ, ㅍ, ㅎ” 들을 첫소리로 하는 “ㄷ”는 “ㄷ” 소리와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 구별되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이다. “ㅅ”이나, “ㅆ”……들을 첫소리로 하는 뒤에 연결되는 “ㄷ”와 “ㄷ”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 “제”로 쓰는 규정과 대조된다.

제 27 항 한자말에서 모음 《ㅇ》가 들어 있는 소리마디로는 《희》, 《의》만을 인정한다.

례 : 순희, 회의, 희망, 유희, 의견, 의의

이 규정은 “한맛”의 “제 9항”과 맞먹는 규정인데, “ㅅ”, “ㄱ”, “ㄴ”들을 첫소리로 하는 “ㄱ”은 그 첫소리의 특성 때문에 “의”인지 “이”인지 분명하게 식별되지 않으므로 이런 것은 “ㅣ”소리로 적는 것과 대조된다.

2. ‘한맛’과 ‘북맛’의 띄어쓰기의 비교

‘한맛’과 ‘북맛’의 맞춤법 규정에서 본 띄어쓰기의 규정은 서술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맛’에서는 맞춤법 규정 속의 하나의 장(章)으로 덧붙인 데 대하여, ‘북맛’에서는 맞춤법과 대립시키어 별도로 규정하였다. 장 절(節) 항(項)의 가름도 판이하게 다르다. ‘한맛’에서는 5장 제 1절 41항에서 제 4절 50항까지의 10개 항으로 갈라서 설명하였다. ‘북맛’에서는 ‘맞춤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총칙’을 제시하여 띄어쓰기의 큰 버리로 삼고, 그 다음은 다시 제 1장에서 시작하였다. 전체가 5개 장의 22개 항으로 ‘한맛’의 ‘항’에 비하여 그 굵이 넘는다.

문법 체계의 큰 차이는 한국에서는 체언이나 조사를 모두 동일한 자격의 한 단어로 인정하고 있으나,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합한 단위를 한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에서는 체언의 여러 단어와 용언의 어간을 동일하게 단어로 인정하고, 조사와 용언의 어미를 모두 ‘토’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였다. 이 ‘토’는 접미사의 특수한 형태로서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에서는 단어와 ‘토’를 붙여 씀으로써, ‘한맛’의 규정과 동일한 결과로 표출되어 모두 붙여 쓰기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맞’과 ‘북맞’의 띄어쓰기의 규정이 같은 것은 제외하고 차이가 있는 것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총 칙

조선어의 글에서는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쓰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모를 소리마디단위로 묶어쓰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쓰도록 한다.

이 총칙 규정은 ‘북맞’에만 있는 조항으로 띄어쓰기의 큰 강령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크게 두 갈래로 갈라 볼 수 있다. 앞 부분은 단어를 한 단위로 하여 띄어 쓴다는 큰 원칙을 제시하였고, 뒤의 부분은 한글 자모의 글자 맞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어끼리 붙여 쓸 수도 있다는 예외 규정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바로 이 예외 규정이 많은 문젯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한 어휘부류’라 하였는데, ‘특수한 어휘부류’라는 개념 규정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 실지 적용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 총칙 규정이 ‘한맞’의 제 1장 총칙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는데, ‘한맞’의 규정에는 원칙만을 제시하였고, 그 세부 사항은 ‘제 5장 띄어쓰기’에서 자세히 규정하였다. 이 원칙의 정신에 의하면, 파생어는 한 단어이니까 별 문제가 없으나, 두 단어가 어울린 경우, 예를 들면, 봄비(春雨), 가을달(秋月) 돌아가다(回還) 찾아보다(訪問)’들을 합성어로 본다면, 한단어이니 만큼 붙여 써야 할 것

이고, 두 단어의 임의적 결합으로 본다면, 두 단어이므로 띄어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띄어쓰기의 영역을 벗어 나서 문법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표준 사전에 의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규정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단어의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문법 연구의 분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나라마다 그 규정이 다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문젯점이 있는 것들이고, 이 문제는 사전의 표제어의 단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단어의 단위가 바로 띄어쓰기의 단위와 이어지는데, 이 문제를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면 도리어 혼란의 씨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제 1장 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이 장은 제 1항에서 4항까지를 포용하고 있는데, 이 4개 항이 모두 명사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이어질 경우의 붙여 쓸 경우와 띄어 쓸 경우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너무나 세부적인 것까지를 규정하게 되어 규정 자체를 이해하기에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감수하게 되었다. 이런 관계로 규정으로서 좀 지나치게 세분화된 흠이 있다 하겠다.

제 1항 토가 붙은 명사는 뒤의 자립적인 명사와 띄여 쓴다.

례 : - 사상에서 주체 국방에서 자위, 당과 수령의 배려

숨은 영웅들의 모범

-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위업을 만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이 규정은 ‘한맛’의 ‘제 41 항’과 같은 면이 있기도 하나, 외연(外延: denotation)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갈피를 잡기가 매우 힘들다. ‘토가 붙은 명사는’이란 말은 해석이 여러 갈래로 될 수 있다. 명사에는 원칙적으로 토가 붙어 쓰이는 것이 국어의 특징이다. 이런 연유로 교착어(膠着語: agglutinative language)라는 유형에 속하는 말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 1차적인 순서로 명사와 토가 어울릴 경우에 대한 규정이 앞서야 할 터인데, 이것은 묵시적으로 붙여 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명사와 토가 붙은 범위의 외부적인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 항에 제시된 ‘레’가 모두 어절과 단어가 어울릴 경우인데, 이런 것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다. 다음의 ‘제 2 항’의 여러 문제와 대립적인 관점에서 이런 규정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 1 항과 ‘한맛’의 41 항과를 비교하여 보면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제 2 항 명사들이 토없이 직립 어울린 경우에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어쓴다.

이 규정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의 개념’ ‘하나의 대상’ ‘묶어지는 덩이’들의 술어인데, ‘하나의 개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하나의 대상’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없이는 이 규정을 띄어쓰기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 규정은 어학적인 술어로 요약하면 합성어로 볼 수 있는 단어와 두 개 이상의 단어나 형태소가 임의적으로 불규칙하게 쓰인 것을 합성어로 볼 것인지 별개 단어로 볼 것인지에 따라 띄어 쓸 경우와 붙여 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맞춤법의 14항~24항의 적기 규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합성어에 대한 단위의 규정이나 파생어끼리 어울릴 적의 단위에 대한 규정은 이미 맞춤법에서 세밀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단어에 대한 지식만 충분히 이해한다면 띄어쓰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세부 분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 2) 고유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 3) 고유한 명칭의 앞뒤에 보통명사적인 것이 어울린 경우
- 4) 나란히 어울린 것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단위가 온 경우
- 5) 앞명사를 다시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자신, 자체, 전체, 전부, 전원, 일행, 일가, 일동, 일체, 모두 ……》등은 그 앞단위에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5개 경우로서 부족한 것은 다시 [붙임]조항으로 보충하고 본문의 예외 규정은 다시 ‘그러나’ 규정으로 보충하였다.

제 3항, 불완전명사와 이에 준하는 단위들은 원칙적으로 앞단어에 붙여쓰며 일부 경우에 띄어쓰는 것으로 조절한다.

현재의 어학적인 용어로서 ‘불완전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로서의 일부 자격이 결여하여, 명사의 범주에 들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관형어를 필요로 하는 말들인데, 여기에 또 불완전명사에 준하는 단위는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 제 3항 규정은 ‘한맞’의 ‘제 42항, 제 43항’에 맞먹는 규정으로 대체로 한맞의 규정과 정반대되는 규정이다. 이 항의 ‘2) 3)’에는 많은 어례를 열거하였는데, 이런 말들의 단어나 형태소들에 대한 분명한 개념 설정을 하면, 그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띄어 쓸 것과 붙여 쓸 것을 판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많은 단어에 대하여 그 붙이고 띄어 쓸 것을 기억하는 부담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우선 그 세부 분류를 제시하고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순수한 불완전명사는 앞단어가 어떤 품사이건, 어떤 형태에 붙여 있건 언제나 그것에 붙여쓴다.

례 : 분, 탓, 짓, 나위, 낚, 지, 때문, 리, 번, 양,

한 마디로 불완전명사는 어느 경우이든 붙여쓴다는 결론이다.

2) 《상, 중, 간 판, 경, 향, 축, 장, 조, 전, 편, 산, 호, 성, 하, 전, 후, 내, 외, 차, 초, 말, 밭, 착, 행, 년 부, 별, 용, 분, 과, 급, 당, 기, 계 래, 형, 제, 식 상(모양), 직》등과 같은 한자말이나, 불완전명사와 《뒤붙이적 단어》는 그 앞단위에 붙여쓰며 그뒤에 오는 단위는 띄어쓴다.

이 2)의 규정을 요약하면

- (1) 한자말로 된 불완전명사
- (2) 토박이말의 불완전명사
- (3) 뒤붙이적 단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앞단위에 붙여쓴다.’

의 개념을 규정화한 것이다. 이럴 경우 앞의 3개 조건의 단어적인 이해만 충분하면 띄어 쓰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할 필요가 있을는지 의심스럽다.

- 3) 시간과 공간의 뜻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고유어명사《앞, 옆, 뒤, 끝, 속, 밖, 안, 우, 아래 밑 사이(새), 때, 제, 결, 길, 군데, 해, 달, 날, 낮, 밤, 곳, 자리, 고장, 어간, 어구, 가운데, 구석》등은 토없는 명사, 수사 대명사 뒤에서 붙여쓰며 일부 경우에는 규정형뒤에서도 붙여쓴다.

이 3)의 규정은 한 마디로 낙제점 이하이다. ‘시간과 공간의 고유어명사’는 명사 중의 고유어, 또 그 중에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고유어와 같이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 이외의 고유명사는 또 달리 규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세분화하면 나중에는 자가당착에 빠져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은 뻔하다. 이런 것은 문법적 소관이다. 문법 체계에서 충분히 이 개념을 이해시키면, 이런 명사는 띄어 쓰느냐 붙여 쓰느냐 하는 결과만 규정하는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다면, ‘띄어쓰기

사전'이라도 따로 편찬하여 글 쓸 때마다 이 사전을 펴 놓고 보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다시 '준하는 처리'가 있고, [붙임]이 또 있으며, [붙임]에 다시 '그러나', 조문까지 들어 있다. 이런 규정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등, 대, 겸, 따위》와 같은 불완전명사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붙임] 그러나 《대》, 《따위》가 다른 단어와 어울리어 하나의 덩어리로 됨을 나타낼 때는 붙여쓴다.

이 '제 3항'의 규정은 큰 벼리가 불완전명사의 띄어 쓰고 붙여 쓰는 문제를 규정한 것인데, 1), 2), 4)는 불완전명사의 띄어쓰기에 관한 것이고, 3)은 완전명사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3)은 이 3항에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불완전명사의 항 속에 완전명사를 포함시키고, 불완전명사를 다시 1), 2), 4)들로 갈랐는데, 1) 2)의 불완전명사는 붙여 쓰라는 규정이다. 1)은 주로 토박이말이고, 2)는 '……등과 같은 한자말'이라 하였다. 한자말의 품사가 무엇인지는 알도리가 없으나 불완전명사가 주류를 이루는 제 3항의 정신으로 보아 이것도 불완전명사에 포함시킬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어를 또다시 토박이말과 한자말로 구별하여 그 적기의 띄어쓰기도 달리 하겠다는 것인지, 그 바로 뒤에 '불완전명사와'라는 말이 이어졌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하여 4)도 불완전명사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띄어쓴다' 하였다. 이려고 보면 불완전명사에도 띄어 쓰는

불완전명사와 붙여 쓰는 불완전명사의 두 유형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띄어쓰기 규정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도무지 식언하지 않은 대목이 너무나 많다.

제 4 항 합친말이나 속어로 된 명사는 붙여쓴다.

1) 동사나 형용사의 《ㄴ》, 《ㄹ》형이 시칭의 뜻이 없이 명사와 어울리면서 그 앞에 다시 《ㄴ》, 《ㄹ》형의 규정어를 받을수 있는것은 붙여쓴다.

.....

2) 두개이상의 단어가 어울려서 하나로 녹아붙은 단위처럼 된 명사는 붙여쓴다.

.....

3) 두개이상의 단어가 겹쳐서 하나로 녹어붙었거나 병렬되는 명사는 붙여쓴다.

..... 띄어쓰기 제 4 항 참조

북한 국어학자들의 사고 방식은 도시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4항의 규정은 합친말과 속어에 대한 띄어쓰기의 규정인데, 보기로 든 말, ‘된장, 식은땀, 작은 아버지[季父] 뜯소문……들은 이미 합성어인데, 합성어는 한 단어다. 그러면 ‘단어는 띄어 쓴다’고 규정하면 그것으로 이 규정의 사명은 다한 것이다. 이 합성어 앞에 어떠한 말이 오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끓은 된장, 심한 식은 땀’……들은 합성어 앞에 놓인 별개의 단어이다. 이런 단어와의 연결까지를 띄어쓰기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끓은 된장’과 동일 형식의 연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끓은 된장,

썩은 된장, 식은 된장,(맛이)없는 된장……’ 등 등, 이러한 것을 모두 띄어쓰기 문제에서 제정할 것인가. 2)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못할말, 여러차례……’ 들을 합성어로 보느냐, 두 개의 단어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띄어쓰기의 소관이 아닌 문법 문제이다. 합성어로 본다면 띄어 쓸 것이요. 두 단어로 본다면 붙여 쓸 것이 아닌가. 3)의 문제도 같다.

제 2장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제 5 항. 수는 아라비아수자로만 적을수도 있고 순수 우리 글로만 적을수도 있으며 아라비아수자에 《백, 천, 만, 억, 조》 등의 단위를 우리 글자와 섞어서 쓸수도 있다. 이때의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1) 아라비아수자로 적을 때에는 단의 자리로부터 세자리까지는 반점을 찍지 않고 붙여쓰며 그이상의 자리수에서는 세자리씩 올라가면서 반점(.)을 찍는다.

예 : - 12

325

1,482,522

9,372,586,365

- 23.5

1,482.52

2) 수사를 우리 글자로만 적거나 아라비아수자에 《백, 천, 만, 억, 조》 등의 단위를 우리 글자와 섞어 적을 때에는 그것을 단위로 하여 띄어쓴다.

례 : - 구십삼억 칠천 이백 오십팔만 육천 삼백 육십오

- 3만 5천 6백 25

- 십삼점 이오 (13.25)

- 삼과 이분의 일 ($3\frac{1}{2}$)

3) 우리 글자로만 수를 적되 《십, 백, 천, 만》 등의 단위를 표시하지 않고 수자의 이름으로만 적을 때는 붙여쓴다.

례 : 삼오 (35), 삼오삼 (353), 이사오륙 (2456), 칠구공팔오 (790085)
특별한 목적으로 반점을 찍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라비아 수자로만 적을 때와같은 자리에 (즉 단의 자리로부터 세자리씩 올라가면서) 찍는다.

례 : 이, 사오륙 (2,456)

칠구공, 공팔오 (790,085)

이 규정은 수사와 대명사의 띄어쓰기인데 제 5 항~7 항은 수사에 관련된 문제이고, 제 8 항~제 9 항은 대명사에 관련된 띄어쓰기이다.

제 5 항에서부터 설명을 덧붙인다. 우선 “수는 …… 쓸 수도 있다”까지는 띄어쓰기 규정과는 무관한 문제다. 이것은 문법이나, 맞춤법의 소관 사항이다. 1) 의 ‘아라비아수자~찍는다’까지를 항으로 승격시키되, 숫적 단위를 제시하고 ‘반점(,)을 찍은 뒤에는 띄어 쓴다’로만 규정하면 될 것이다.

2) 의 규정도 ‘수사를 …… 그것을 한 단위로 하여’를 ‘한 단위의 단어로 한다’로 규정하면 된다. 큰 벼리에서 ‘단어는 띄어 쓴다’라는 규정이 있는 이상, 한 단어는 이 규정의 범주에 속할 것이니,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의 예로 든 말

을 그 조항으로 옮기면 아주 간단 명료한 규정이 될 것이 아닌가.

3)의 규정도 참 이상하다. ‘숫자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열거한 만큼의 숫자를 한 단위의 단어로 간주한다’라는 말을 ‘단어’를 규정하는 조문에 첨가시키고 그 보기로써 삼오(35)…… 등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제 6 항 《수》나 《여》, 《나마(나문)》가 수사와 직접 어울려서 대략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을 붙여쓴다.

- 례 : - 수십, 수백만, 수십억, 삼백수십(개), 수백수천(발), 수삼년, 수삼차
- 백여, 50여, 1,000여(톤), 5년여, 3시간여, 수십여(년), 수만수천여(개)
- 100나마, 오백명나마, 석달나마, 스무나문, 여나문

이 규정도 띄어쓰기 규정으로서 부적합하다. ‘수(數) 여(餘) 나마(나문) [餘] 들은 다음과 같이 쓰일 경우에는 접사(接辭: affix)로 본다’하고 보기를 들어서, 문법 범주에 넣어 설명하면 충분하다. 접사 중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은 말은 파생어으로써 한 개의 단어이다. 그러면 이것은 ‘단어 단위로 띄어 쓴다.’하는 큰 벼리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이다. 문법과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혼동하고 있다.

제 7 항 수사가 토없이 완전명사와 어울린것은 띄어쓰며 단위명사(또는 이에 준하는 명사)와 어울린것은 붙여쓰는것을 원

칙으로 한다.

1) 수사가 토없이 완전명사와 어울린것

례 : 두 공산주의자의 이야기

세 기술일군의 참관

일곱 녀학생의 아름다운 소행

2) 수사가 토없이 단위명사(또는 이에 준하는 명사)와 어울린것

례 : 50명, 48톤, 5시, 2년, 5일, 두살, 다섯개, 세마리, 한
두름, 두벌, 네말, 여섯킬래, 39분, 28초, 네그릇, 12자,
세묊음, 여덟병, 한길, 석단, 학생 9명, 1등, 최근 100년
간, 실 한토리, 1급, 1항차, 1량

【붙임】 《성상, 세월, 나이, 평생, 고개》등과 같은 완전명사
도 단위명사에 준하여 처리한다.

례 : 15성상, 70나이의 고령, 60평생, 20여성상, 60여평생,
70살나이에, 마흔고개, 칠순고개, 60살고개

이 7항의 규정도 짜증이 날 만큼 되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1) 2) 모두 단어 규정의 범주에 들어갈 문법 문제이다. 띄어쓰기 문
제는 단어가 여러 다른 형태소와 어울릴 때에 시각적 효과를 거두기 위
한 방편이다. 따라서 단어, 또는 형태소의 개념, 특히 단위 개념만
철저히 익히면 띄어쓰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제 8항 대명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품사와 띄여쓰며 불완전명사
(또는 이에 준하는 일부 명사)와 직접 어울린것만 붙여쓴다.

례 : - 내 조국, 우리 식, 우리 말, 이 나라, 제 땅우에서,
제 힘으로 ...

저기 저 바다로 우리 함께 가자.

내 네 말을 잊지 않고있다.

- 이것, 그이, 저분, 무엇때문에, 누구것이나?, 네탓이다,
이해, 이달, 그밖에, 그곳, 그때, 제때 ...

【붙임】 대명사가 다른 품사와 어울려 하나의 덩이로 굳어
졌거나 《자신, 자체, 전체, 모두, 스스로》와 어울리는 경
우의 띄어쓰기는 기본적으로 명사의 경우와 같다.

례 : - 내남없이, 너나들이, 저저마다

- 나자신, 우리들전체, 그들자체, 우리스스로 ...

이 8 항의 규정도 불필요한 규정이다. ‘대명사는 원칙적으로 다
른 품사와 띄어쓰며’ 라고 규정하였다. 어째서 띄어 쓴다는 말인가.
필자가 알기로는 독립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는 것이리
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다른 이유를 찾을 근거는 없지 않은가. 그
러면 큰 벼리에서 ‘대명사는 한 단어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으
니 단어라는 범주에 든다는 조건이 충족된 이상 자동적으로 띄어
쓸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붙임]의 규정도 마찬가지다. 논리에서
벗어난 중언부언한 규정답지 않은 규정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
다.

제 9 항 같은 수사나 대명사가 겹치면서 강조 또는 여럿의 뜻
을 나타내는것은 붙여쓴다.

례 : - 하나하나, 둘둘, 하나씩 하나씩, 들씩들씩, 열스무(차례),
하나들(구령)

- 누구누구, 무엇무엇(뿔뿔)

- 너도나도, 그나저나, 이곳저곳, 네것내것, 내일 내일

앞의 8항과 같은 논리이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제 3장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제 10항 동사나 형용사끼리 어울렸을 경우의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가 붙은 자립적인 동사나 형용사가 다른 자립적인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린것은 원칙적으로 띄어쓴다.

례 : - 들고 가다, 가면서 말하다, 들어서 올리다, 붉게 타다,
깨끗하여 좋다, 용감하고 지혜롭다.

- 맑고 아름다운 강산,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인민

1) 은 ‘한맞’의 개념으로는 독립된 단어와 단어끼리 어울리는 경우로서 ‘단어는 띄어 쓴다’는 규정으로 족한 것이니 규정화할 필요가 없다. ‘토가 붙은 자립적인 동사’라 하였으나, ‘토’가 붙지 않고 쓰이는 동사나 형용사는 없다.(이 ‘토’는 ‘한맞’의 의미에 해당함)

2) 토가 있지만 띄어쓰지 않는것은 다음과 같다.

(1) 《고》형의 동사가 다른 동사와 어울려 하나의 동사로 녹아붙은것은 띄어쓰지 않는다.

례 : - 짜고들다, 먹고떨어지다, 밀고나가다, 들고뛰다, 캐고들다,
늘고먹다, 들고치다, 파고들다, 안고몽개다

(2) 《아, 어, 여》형의 동사나 형용사에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사가 직접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 례 : - 돌아가다, 돌아치다, 몰아내다, 볶아대다, 잡아쥐다
 - 쫓아지다, 쓸어버리다, 들어보다, 애써 보다, 적어두다
 - 배껴주다, 건디여내다, 버티여내다, 다녀가다
 - 반가와하다, 미워하다, 두려워하다

(3) 《아, 어, 여》형이 아닌 다른 형 뒤에서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는 붙여쓴다.

- 례 : - 읽고있다, 쓰고있다, 말고있다, 쉬고있다, 읽고계시다, 쓰
 고계시다, 말고계시다, 쉬고계시다
 - 읽고싶다, 먹고싶다, 가고싶다, 듣고싶다, 읽는가싶다, 먹
 는상싶다, 필상싶다, 아시다싶이, 보시다싶이
 - 하고나서, 끝나고나서, 읽다나니, 늙다나니, 보고나니, 돌
 아다니다나면
 - 쓰고말다, 보고말다, 버리고말다, 가고말다, 나가자마자,
 들어서자마자, 물어보자마자
 - 읽는가보다, 올가보다, 왔됐다보다, 알고보니, 써놓고보니,
 세워놓고 보니

2) 3) 은 한말의 ‘제 15 항’의 [붙임 1]과 맞먹는 규정으로 합성어로 본다면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합성어로 보지 않는다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의 근원적인 문제는 단어의 규정 문제에 속한다.

- (4) 《아, 어, 여》형의 동사나 형용사가 잇달아있을 경우에는 자립적인 행동의 단위마다 띄어쓴다.
 - 기여넘어가 살펴보다, 들어가 집어올리다, 만나보아 알고 있다, 받아안아 덮어쌓다

(5) 토 《나, 디, 고, 도, 니...》을 사이에 두고 두개의 동사나 형용사가 겹친것은 붙여쓴다.

례 : - 크나큰, 기나긴, 머나먼, 높으나높은, 짧으나짧은, 깊으나깊은, 자나깨나

- 달디단, 쓰디쓴, 높디높은, 깊디깊은, 차디찬, 넓디넓은

- 넓고넓은, 멀고먼, 부르고부르는, 크고작은, 높고낮은, 주고받는

- 가도가도, 오도가도, 길고도긴, 넓고도넓은

- 긴긴(밤), 먼먼(옛날)

【붙임】 그밖의 형태의 합친말, 겹친말도 이에 준한다.

례 : - 높으락낮으락, 이러쿵저러쿵, 죽을동살등, 이러니저러니, 들락날락, 왔다갔다, 들쭉날쭉, 본숭만숭, 앞서거니뒤서거니, 덮어놓고, 묻다못해, 하다못해, 보아하니

(6) 《듯, 만, 번, 법, 사, 척, 체...》등이 붙은 동사나 형용사가 토없이 《하다》와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례 : - 올듯하다, 들을만하다, 만날번하다, 갈법하다, 웃을사하다, 가는척하다, 아는체하다

- 올듯말듯하다, 웃을사웃을사하다, 아는체 마는체하다

그러나 《듯, 만, 번, 법, 사, 척, 체...》뒤에 토가 붙으면 《하다》는 띄어쓰기로 한다.

례 : - 갈듯도 하다, 오를만도 하다, 그럴법도 하다

- 그럴만은 하다, 아는체를 한다, 웃을사는 한다

- 올듯말듯도 하다, 웃을사웃을사는 한다, 아는체 마는체를 한다

(7) 토 《지》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가 다른 단어와 어울린것은

띄어쓴다.

례 : - 그렇지 않다, 이기지 못하다, 맞갖지 않다, 갈지 모른다.

- 마지 못해, 머지 않아, 못지 않다

- 믿어마지 않다, 바라마지 않다

그리어마지 않다, 존경하여마지 않다

(4)~(7)의 규정 중 (4)와 (7)은 띄어쓰는 말들이고, (5)와 (6)은 붙여 쓰는데 대한 규정이다. 그리고 (4)(5)는 외연적 규정이다. 즉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는 경우이니 만큼, 환경적 조건에 따라 합성어로 보느냐, 별 개의 단어로 볼 것이냐 하는 단어의 규정 문제에 속하는 것이니, 그 문법 체계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시시콜콜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5)의 첫번째 보기는 ‘자나깨나’만 반대 개념의 합성어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동일한 단어의 끝바꾼 겹침이다. [붙임]에서 ‘합친말, 겹친말도 이에 준한다’하였다. ‘합친말, 겹친말’은 한 단어이다. 한 단어의 내부적 문제라면 붙여 쓸 것은 뻔하지 않은가.

(6)은 ‘한맞’의 ‘제 47 항’의 본문과 ‘다만’에 맞먹는 규정으로 ‘듯하다, 만하다...’들을 보조 용언으로 보아 앞말에서 띄어 썼는데 ‘북맞’에서는 붙여 썼다. 국어 어문 규정집(1989:22 참조)에서의 ‘다만’규정은 ‘북맞’의 ‘그러나’의 규정과 같이 띄어 썼다. (7)은 부정어의 경우로서 ‘한맞’에서는 보조 용언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엄연히 두 단어인 까닭에 규정화하지도 않은 것이다. 두 단어로 볼 수밖에 없는 말까지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7)의 어례(語例)를 검토하여 보자. 어느 것 하나 부정어(否定語 : negation) 아닌 것이 있는가.

제 11 항 동사, 형용사가 명사, 부사와 어울린 경우의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1) 토없는 명사에 《하다, 되다, 시키다》가 직접 붙은것은 붙여쓴다.

례 : - 건설하다, 겨냥하다, 나무하다, 눈짓하다, 바느질하다, 창조하다, 투쟁하다, 이신작척하다, 영광찬란하다.

- 구현되다, 련관되다, 참되다, 창설되다, 영웅되다, 공고발전되다

- 련습시키다, 분리시키다, 숙련시키다, 공고발전시키다, 긍정감화시키다.

그러나 《하다, 되다, 시키다》의 앞에 《못, 아니, 안》등이 끼일 때에는 앞의 명사단위를 띄어쓴다.

례 : 용서하다 - 용서 못하다

말하다 - 말 못하다

허용되다 - 허용 못되다

모순되다 - 모순 안되다

운동시키다 - 운동 안시키다

숙련시키다 - 숙련 못시키다

이 규정은 ‘한맞’에서는 띄어쓰기 규정으로 엮매어 놓지 않은 것들이다. 토박이말의 어근에 ‘하다’가 붙는 말은 원칙적으로 한 단어로 보는데, 한 단어이면 붙여 쓸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규정 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단어인 경우 동사적인 명사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다’와 어울리어 한 단어가 된다. 즉 동사 형용사이다. 이런 경우도 규정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그러나 ‘되다, 시키다’의 경우는 윗말과 어울릴 경우, 윗말과 아주 녹아서 한 낱말이 된 것이면 붙여 적고, 그렇지 않은 것은 띄어 쓰는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이런 것을 규정으로 묶어 놓으면, 오히려 그 규정 자체에 사로잡혀 판단의 기준을 잃을 염려가 있는 것이다. 이항에서 보기로 든 ‘영광찬란하다, 공고발전되다, 긍정감화시키다 ...’ 들을 붙여 쓴 것은 확실히 모순된 규정이다. 이런 말을 붙여 쓴 근거는 그 잣대가 문법적 체계일 것인데, 이런 말들을 한 단어로 본다면 우선 문제가 ‘단어의 기준 설정’이다. 어느 근거에서 한 단어로 보았는지가 분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단어의 기준이나 그 단위 설정에 대한 문제는 문법 소관이 되는 것이지, 띄어쓰기에서 문제 삼을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규정도 그렇다. ‘용서 못한다’는 두 단어임에 틀림 없다. 그러니 당연히 띄어 써야 할 것 아닌가.

2) 명사에 《지다》가 직접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례 : - 값지다, 홀지다, 건방지다, 외지다, 구성지다, 멋지다, 둥글지다, 아롱지다

- 모지다, 살지다, 그늘지다, 굽이지다, 장마지다, 언덕지다, 얼룩지다, 열매지다, 짝지다

3) 토없는 명사에 《답다, 거리다, 겹다, 맞다, 굵다, 적다, 어리다》등이 직접 어울려서 형용사를 이루는것은 붙여쓴다.

례 : - 꽃답다, 남자답다, 청년답다, 녀성답다, 인민군대답다.

- 흥겹다, 눈물겹다, 정겹다

- 능청맞다, 방정맞다

- 심술궂다, 버릇궂다, 험상궂다

- 멋적다, 맞적다, 열적다

- 지성어리다, 정성어리다, 정기어리다, 피어리다

이 2), 3)의 규정은 ‘한맞’에서는 ‘제 21 항’의 여러 하위 분류에서 ‘맞춤법’의 규정으로 정하여 놓은 말들이다. 이것은 띄어쓰기의 소관이 아니다

4) 토없는 명사에 고유어로 된 동사와 형용사가 직접 어울려서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를 이루는것은 붙여쓴다.

례 : - 꿈꾸다, 춤추다, 잠자다, 잠지다, 셈세다, 숨쉬다, 금궂다, 걸음걸다, 땀뜨다

- 가살부리다, 극성부리다, 심술피우다, 익살피우다, 방정떨다, 엄부럭떨다, 소리치다, 활개치다, 굽이치다, 고동치다, 끝맺다, 시집가다, 맴돌다, 감사납다, 길차다, 힘차다, 주제넘다, 몸풀다, 눈팔다, 낮설다, 일삼다

- 낮익다, 눈멀다, 힘들다, 빛나다, 유별나다, 끝나다, 한결같다, 낮같다, 류다르다, 눈부시다, 때늦다, 움트다, 싹트다, 해지다, 번개치다, 대바르다, 가슴아프다, 심술궂다, 남부럽다, 마음놓다, 의리깊다, 실속있다, 패기있다, 활기있다, 깊이있다, 무게있다, 설새없다, 맥없다, 힘없다, 레절없다, 눈치없다, 나 많다, 꼴사납다, 나어리다, 발벗다, 수놓다, 마감짓다, 매듭짓다, 손대다, 밥먹다, 발맞추다,

꽃갈다, 꿀갈다

【붙임】 대명사나 그밖의 품사와 어울려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로 쓰이는것도 이에 준한다.

례 : - 그같은, 이같은, 나보고, 너나들이하면서, 제자리걸음하고...
- 끈이든다, 내리누르다, 가로채다, 올리벌히다, 가로지르다,
넘다지르다, 넘다치다, 기껏해서

5) 동사, 형용사가 명사, 부사와 어울려 잇달아있는 경우에는 행동의 단위에 따라 처리한다.

례 : - 몸바쳐 일하고있다.

어깨걸고 나아간다.

앞장서 나가고있다.

몸바쳐 투쟁해나가고있다.

-해빛을 받아안고 솟구쳐나다.

일을 바로잡아 고쳐나갔다.

제품을 만들어 내려보냈다.

물에 씻겨 내려가고있었다.

6) 동사, 형용사의 앞에 오는 명사에 토가 없어도 토를 줄었다는것이 뚜렷하고 끊기여 발음될 때는 띄어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 은혜로운 해발 안고

사랑의 정 품고

간절한 마음 담아

떨적의 기세 드높은

우리의 정성 담은 선물

‘ 4) , 5) , 6) ’ 모두 띄어쓰기의 소관이 아니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제 12 항 《앞, 뒤, 곱, 곁》등이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례 : -앞서다, 앞지르다, 앞당기다, 앞차다, 앞두르다

-뒤서다, 뒤늦다, 뒤떨어지다, 뒤쫓다, 뒤돌리다

-곱먹다, 곱가다, 곱돌다, 곱씹다

-곁쓰다, 곁쌍다, 곁입다, 곁차다, 곁싸다, 곁붙이다

【붙임】《앞장, 버금, 다음, 으뜸》과 《첫째》도 이에 준한다.

례 : -앞장서다, 버금가다, 다음가다, 으뜸가다, 첫째가다

이 규정도 ‘단어’의 단위나, 그 규정에서 다룰 문제이다.

제 4 장 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제 13 항 관형사는 그뒤의 단어와 띄여쓴다.

례 : -모든 공장, 여러 책, 온갖 문제, 새 규정책, 온 마을,

별의별 이야기, 별 이야기, 각 도서관, 어느 기술자, 제

반 사실, 첫 전투, 첫 프롤레타리아정권, 맨 옷자리, 현

국제정세, 매 도, 매 군, 무슨일, 어느동무, 웬 사람, 순

독학으로, 귀 대표부, 탄 사람, 전(이전)대통령, 한다는

선수, 이까짓 종이

-온갖 한다는 선수들, 별 탄 문제, 무슨 별별 이름모를

식물들, 여러 새 양복, 그까짓 탄 마음, 한다는 여러 인

사들, 제반 새 사전들, 별의별 새 이야기

-원 이름밑에 새 이름을, 옛 전우들의 모습, 온 정신을

가다듬어, 각 대학 학생들

이와 관련하여 관형사《첫, 새》 등은 일부 합친말의 구성 부분으로 된것만을 예외적으로 붙여쓰기로 한다.

례 : -첫코, 첫발, 첫맛, 첫날옷, 첫젓, 첫어구, 첫인상, 첫길, 첫
 더위, 첫물, 첫울음, 첫술, 첫눈, 첫정, 첫끝, 첫입, 첫날밤,
 첫머리, 첫시작, 첫새벽, 첫추위, 첫아침, 첫인사, 첫출발,
 첫국밥, 첫숨씨, 첫마수걸이, 첫닭울이, 첫걸음마
 -새색시, 새각시, 새신랑, 새서방, 새해

그밖의 관형사도 합친말의 구성부분으로 들어간것은 붙여쓴다.

례 : -각살림, 온종일, 전당, 별소리, 헌쇠, 판판, 옛말, 헛물, 맨
 주먹, 원가지, 전세계

【붙임】《일단》과 《전체, 일부, 소수, 극소수, 력대, 해당》등은
 관형사적으로 처리하여 명사의 앞에서 띄어쓴다.

례 : -일단 유사시, 전체 인민, 일부 력량, 해당 력사적 사실
 -소수 자본가계급, 극소수 특권층, 력대 위정자들

이 규정도 단어의 문제이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제 14 항 부사는 기본적으로 띄어쓰되 특수한 경우에 조절하여
 붙여쓴다.

1) 자립적인 모든 부사는 띄어쓴다.

례 : -나란히 높다, 따듯이 보살피다, 먼저 가다, 무척 애쓰
 다, 바로 찌르다, 극력 아껴쓰다, 아까 떠났다, 가까이
 접근하다

-비교적 높다, 편의상 한곳에 넣어둔다, 사실 알고있었
 다, 정말 기적적이다

-똑바로 서다, 스스로 물러가다, 더욱 아름답다, 차차
 더위지다, 칠렁 떨어지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 잘 쓴
 다, 잘 간다

2) 일부 부사에 《학다, 되다, 시키다》가 붙어 하나의 동사 처럼 된것은 붙여쓴다.

례 : 못하다, 잘되다, 안시키다, 덜되다

3) 부사를 겹쳐쓰거나 잇달아쓸 경우는 붙여쓴다.

례 : -가득가득, 서로서로, 거듭거듭, 고루고루(골고루), 어슬렁어슬렁, 차츰차츰, 높이높이, 다시다시, 다시금다시금, 두고두고

-더욱더, 더더욱, 이리저리, 울긋불긋, 그럭저럭, 얼기설기, 허둥지둥, 올망졸망, 끈이끈대로

-또다시, 한층더, 모두다, 다같이, 똑같이

4) 부사가 다른 품사의 단어와 어울린 경우라도 한덩어리로 굳어진것은 붙여쓴다.

례 : -가슴깊이, 심장깊이, 가슴뿌듯이, 가슴듬뿍, 하늘높이, 가뭏없이, 영낙없이, 난데없이, 끝없이, 한량없이, 한없이, 한결같이, 감쪽같이, 불같이, 벼락같이, 꿈결 같이

-더없이, 꿈쩍없이, 덧없이, 다시없이, 하염없이, 두말없이
-꿈쩍못하게, 쥐죽은듯이

-왜냐하면, 다시말하여, 아닌게아니라, 다름아니라

5) 이음부사 《및, 또, 또한, 또는》등이 두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할 때에는 그 앞뒤단위를 언제나 띄어쓴다.

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 및 정부대표단
노동자, 농민, 근로인태리 및 군인들
평양시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화학 및 경공업위원회
-진진, 진진, 투쟁 또 진진

사과와 배 또는 복숭아와 감
숨겨있는데다가 또한 용단도 있다.

설명은 생략한다.

제 15 항 두개이상의 서로 다른 품사가 하나로 녹아붙어 한마디
의 부사와 같이 된 경우는 붙여쓴다.

례 : - 간밤에, 오는해에, 지난해에, 이른봄에, 이른아침에, 늦
은 가을에
- 여름철에, 봄날에
- 이다음, 요사이, 이해에, 이달에, 그날에, 그사이, 그
동안

이 규정은 합성어인지 두 단어인지의 변별이 기초문제가 된다. ‘이
른봄에, 이른아침에, 늦은가을에’ 등을 붙여 쓰는 근거가 박약하다.
이런 말을 합성어로 본다면, ‘늦은아침에’ 깊은밤에, 지난여름에 ……
등도 합성어로 보아야 할 터인데 문젯점이 많다.

제 16 항 감동사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마디들은 소리와 뜻을 고
려하여 따로 띄여쓴다.

례 : - 아아 아!
아 아아!
아뿔사, 열쇠를 잊었군!
- 여, 빨리 끝내세, 박동무!
응, 곧 끝내겠네.
총소! 기다리지
- 얼씨구 절씨구 얼싸 둥둥
얼씨구절씨구 얼싸둥둥

‘감동사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마디’들은 독립된 버젓한 한 단어인 만큼 띄어 쓸 것은 당연하다. 규정할 필요가 없다.

제 5장 특수한 말, 특수한 어울림에서의 띄어쓰기

제 17항 글의 논리적 련관에 따라 붙여쓰고 띄여쓰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동격어를 받는 단어의 뒤에 온 명사는 띄여쓴다.

례 : 신문《민주조선》 창간

박사 김준석동지 집필원고

작가 리기영선생 창작사업

설명 생략

2) 련달아서 명사들이 토없이 어울릴 때 그 명사들 사이를 떼고 붙이는 것은 앞에 놓인 단위와의 논리적 련관에 따른다.

례 : - 우리 당 정책 관철에서

우리 집 문제, 새 전망계획 기간

넓은 사상 잔재, 넓은 사상 독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

여러가지 광물 생산실적

우리 나라 주재 ○○대사관

- 김 아무개 청년을 포함한 대표단성원(대표단성원 전체)

김 아무개 청년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성원

(대표단의 한 성원)

一새 전쟁 도발책동(새 전쟁)

새 전쟁도발책동(새 책동)

설명 생략

제 18 항 고유어로 된 차례수사가 규정어로 될때는 그 뒤 단위를 띄어쓴다.

례 : - 첫째 문제, 둘째 강의, 셋째 주, 넷째 손잡이
이에 준해서 《첫번째, 두번째...》등도 같이 처리한다.

례 : 첫번째 교실
두번째 집
다섯번째 공격

단어의 기준 문제이므로 생략

제 19 항 명사와 토없이 직접 어울린 《너머, 따라, 건너, 걸러》는 붙여쓴다.

례 : 산너머 외가집에 갔다.
오늘따라 바람이 세군.
바다건너 먼 대륙에서 왔다.
두달걸러 받았다.

‘바다건너, 두달걸러’들을 붙여 쓰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합성어성립의 잣대를 어디에 두었는지 의심스럽다.

제 20 항 여러가지 부호 다음에 오는 토는 그 부호뒤에 붙여 쓴다.

례 : - 《가》에서 《卜》가 모음이다.

X는 모르는 수이다.

- 그는 《불이야》라고 웨쳤다.

설명 불필요

제 21 항 학술용어, 전문용어의 띄여쓰기는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품사소속과 형태에는 관계없이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 - 난바다, 먼바다, 먼거리수송대, 나도국수나무, 팽의밥풀,

굳은 - 넓은 잎나무

- 나무타르, 변형이음률, 세마치장단, 끝소리법칙, 한값빠지

기현상

2) 규정어, 보어, 상황어로서의 구획이 뚜렷한 대상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그 규정어, 보어, 상황어 단위로 띄여쓴다.

례 : - 모뜨는 기계, 모내는 기계, 벼베는 기계, 풀베는 기계,

벼가을하는 기계,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는 기계, 집

·실고부리는 기계

- 키큰 나무, 키작은 나무, 떨어진 과일, 물얕은 바다

1) 은 ‘한맛’의 ‘제 50 항’과 맞먹는 규정으로 서로 반대되기도 하고 허용 조항은 동일하기도 한다.

2) 는 설명 생략

제 22 항 성구나 속담 등의 띄여쓰기는 다음과 같다.

1) 단어들어 토없이 어울려 이루어진 속담이나 고유어성구는 원칙적으로 붙여쓴다.

례 : -결 불맞다, 랑다리치기, 식은죽먹기, 수박겉핥기

-이웃사촌, 오누이쌍둥이, 부영이셈, 토끼잡

-두루미 쫄지같다, 선손쓰다, 코메우다

2) 토가 줄어진 속담이나 성구는 원칙적으로 단어 또는 단어화된것을 단위로 띄여쓴다.

-소 닭보듯

고양이 쥐생각하듯

핑구워먹은 자리

1) , 2) 설명 생략, 대체로 무난한 규정이다.

3. 문장 부호법 비교

이 문장 부호에 대하여는, '한말'에서는 부록으로 규정하였는데, 장, 절, 항 등으로 가르치지 않고,

I 마침표〔終止符〕

II 쉼 표〔休止符〕

III 따옴표〔引用符〕

IV 묶음표〔括弧符〕

V 이음표〔連結符〕

VI 드러냄표〔顯在符〕

VII 안드러냄표〔潛在符〕

들의 7개 부호로 갈라서, 이것을 다시 세분하여 설명하는 식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말'에서는 '조선말 규범집'의 4개 규범 가운데

세째 규범으로 따로 세웠다. ‘총칙’을 따로 세우고, ‘20항’으로 갈라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 1항에서 전체 부호를 제시하고 이 순서에 따라 그 부호의 뜻과 용법을 차례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명의 편의를 따라 일람표를 제시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한다. 이 일람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한다.

총 칙

현대조선말의 문장부호는 문장들, 문장안의 각 단위들을 뜻과 기능에 따라 갈라주기 위하여 친다.

제 1항 우리 글에서 쓰는 종류와 이름

※ 종류와 이름은 별지에 일람표로 제시한다.

부 항	부 호	부 맞	한 맞
2 항	.	점(끝점)	은 점
3 "	:	두 점	쌍 점
5 "	,	반 점	반 점
4 "	;	반두점	×
6 "	?	물음표	물 음 표
7 "	!	느낌표	느 김 표
8 "	-	이음표	불 입 표
9 "	—	풀이표	출 표
10 "	...	줄임표	줄 입 표
11 "	《 》	인용표	“ ” 큰따옴표

북 맞 항	부 호	북 맞	한 맞
12 항	< >	거듭인용표	' ' 작은따옴표
13 "	()	쌍 괄 호	소 괄 호
13 "	[]	꺾쇠괄호	대 괄 호
15 "	밑 점	
16 "	○○○	숨 김 표	숨 김 표
16 "	×××	숨 김 표	숨 김 표
16 "	□□□	숨 김 표	빠 짐 표
17 "	//	갈 음 표	×
18 "	~	물 결 표	물 결 표
	○	×	고 리 점
	•	×	모 점
	.	×	가운데점
	/	×	빗 금
	{ }	×	중 괄 호
	◦ .	×	드러냄표
	『 』		겹 닷 표
	「 」		낫 표

Ⅲ. 남북한 한글 맞춤법의 차이점 비교

‘북맞’에서는 ‘한글’이란 말은 한 군데도 쓴 일이 없고, 국어라는 말조차 기피하고, 오로지 ‘조선말, 조선글’로 일관하였다.

말이나 글의 호칭까지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달리 부르는 것 같다. 국어를 공동 연구할 때 이런 것도 큰 장애물로 등장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현재까지 맞춤법 전반에 걸친 문제 중에서 차이점만을 추출하여 다음에 제시한다. 비교의 방법은 ‘한맞’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장, 절, 항’들과 비교하여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이어 나가고자 한다.

1. 맞춤법의 차이점 비교

1) 총 칙

한맞에서는 제 1 장 총칙을 3 개 항으로 갈라서, ‘제 1 항 표준말, 제 2 항 띄어쓰기, 제 3 항 외래어’들로 갈랐는데 북맞에서는 ‘절, 항’들을 가르치지 않고 ‘맞춤’법에 대하여서만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현대 어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하였다.

첫째 :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이란 말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단어 자체가 소리와 뜻의 통합체인데, 이 중에서 어떻게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만을 분리시킬 수 있는는지,

둘째 :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강령으로
예외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고 관습을 따르는 것도
허용

같게 적는 원칙은 기본인데, 두 예외 규정을 병립시키었는데, 기
본 강령을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한 것은 비논리적이다.

한맞은 첫째 표준어가 대상이 되고, 둘째 이것을 소리나는 대로
적되, 세째, 소리만으로 적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문법적인 면을 고
려하라는 내용으로 일목요연하다.

2) 자모의 이름과 순서

한맞 제 4 항 관련

북맞 제 1 항 관련

(1) ‘한맞’과 ‘북맞’의 이름이 다른 것

	ㄱ	ㄷ	ㅅ	ㅈ	ㅊ	ㅃ	ㅆ	ㅉ
한맞 :	기역	디글	시웃	쌍기역	쌍디글	쌍비읍	쌍시웃	쌍지웃
북맞 :	기읍	디읍	시웃	된기읍	된디글	된비읍	된시웃	된지웃

※ ‘북맞’의 허용 : ㄱ ㄴ……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ㅊ,
ㅌ, ㅍ, ㅆ, ㅉ

(2) 순 서

한맞 : 제 4 항 관련

북맞 : 제 1 항 관련

자 음

한맞 : ㄱ, ㄲ, ㄴ ㄷ ㅌ, ㄹ ㅍ,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ㅅ ㅋ ㅌ ㅍ ㅎ

북맞 : ㄱ ㄴ ㄷ ㄹ ㅍ ㅂ ㅅ ㅇ ㅈ ㅊ ㅅ ㅋ ㅌ ㅍ ㅎ ㄱ
 ㅌ, ㅃ, ㅆ, ㅈ
 모 음

한맞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북맞 : ㅏ ㅓ ㅗ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받 침

한맞 : ㄱ ㄲ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ㅂ ㅃ, ㅆ ㅈ, ㅉ ㅊ ㅋ,
 ㅌ ㅍ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북맞 : ㄱ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ㅂ, ㅃ ㅆ ㅈ ㅉ ㅊ ㅋ
 ㅌ ㅍ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ㄱ ㅆ

3) 한 형태소 안의 된소리

한맞 제 5 항 제 53 항, 다만 관련

북맞 한 형태부의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제 4 항

2, ㄴ, ㄹ ㅍ,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 6 항, 관련

한맞 : ㄹ까, ㄹ꼬, ㄹ쏘나

북맞 : ㄹ가, ㄹ고, ㄹ소나

‘한맞’에서는 발음나는대로 된소리로 적는데 반하여 북
맞에서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4) ‘ ㄱ ’ 와 ㄱ

한말 : 제 8 항 관련

북말 : 제 26 항 관련

한말 : 매별 (袂別), 폐품 (廢品), 폐쇄 (閉鎖), 화폐 (貨幣),
폐염 (肺炎)

북말 : 매별, 폐품, 폐쇄, 화폐, 폐염.

‘ 한말 ’에서는 ‘ ㄱ ’음을 인정하는데 ‘ 북말 ’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게 (揭, 憩, 偈)들은 ‘ ㄱ ’를 인정하고 있다.

5) 두음법칙

한말 : 제 10, 11, 12 항 관련

북말 : 제 25, 26 항 관련

한말 : 여자 (女子), 연령 (年齡), 양심 (良心), 이치 (理致),
낙원 (樂園), 내일 (來日)

북말 : 녀자, 년령, 량심, 리치, 락원

‘ 한말 ’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고, ‘ 북말 ’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말 : 제 11 항 불임 관련

북말 : 제 75 항 관련

한말 : 나열, 치열, 비열, 비율, 전열, 운율

북말 : 나렬, 치렬, 비렬, 비률, 전렬, 운률

‘ 한말 ’에서는 소리나는 대로 의 규칙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 북

맞'에서는 소리는 '열, 울'로 나뉘, 글자 음에 충실하기 위하여
ㄹ 초성을 쓰는 것인지, 소리조차도 ㄹ 소리로 나는 것인지는 실
지 그 발음을 들어 보지 못한 현실에서 무어라 말하기 곤란하다.

6) 겹쳐 나는 소리

한맞 : 제 13 항 관련

북맞 : 북한의 현대 조선말 사전

한맞 : 연연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相從)

북맞 : 련련불망(//), 류류상종(//)

한맞에서는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연련, 유류'들로 '적던
것을 '한맞'에서 위와 같이 고치었는데, 북맞에서는 글자의 본음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7) (이)오와 (이)요

한맞 : '제 15 항 2, 3 과 다만,' 관련

북맞 : 규정 없고 용례에서

한맞 : 종결행 ; 책이오, 오시오, 아니오

연결행 ; 책이요, 붓이요

북맞 : 모두 ; 책이요, 붓이요, 아니요

'한맞'의 '책이오'와 '오시오'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시오'의 '시'는 보조어간이므로 이것을 빼면 '오오'로 될
뿐이고, '오요'로는 발음되지 않는다.

8) 어미 -어 / 아 -었 / 았 -의 적기

한맞 : 제 16 항 관련

북맞 : 제 11 항 관련

한맞 : 괴어, 개어, 배어, 되어, 쉬어, 띄어, 괴었다. 개었다. 배었다.
되었다. 쉬었다. 띄었다.

북맞 : 괴여, 개여, 배여, 되여, 쉬여, 띄여, 괴였다., 개였다., 배였다.,
되였다., 쉬였다., 띄였다.

‘한맞’에서 -어 / 아 -었 / 았 -으로 적는 근거는 이들 어미가 기본 어미이고, ㅣ, ㅞ, ㅟ, ㅠ, ㅡ, ㅢ 뒤에서는 이들 소리와 동화되어 ‘어’가 ‘여’로, ‘아’가 ‘야’로 바뀐 것이므로, 이와 같이 연접에 의하여 바뀌는 것은 바뀌지 않은 어미를 기본으로 삼는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리고, 어간 ‘하’의 다음에서는 ‘한맞’과 ‘북맞’이 똑 같은데, 이것은 그 발음이 ‘여’ 이외에 달리 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환경으로 부사로 된 단어의 ‘어’가 ‘북맞’과 ‘한맞’이 달리 쓰는 것이 있다.

북맞 : - 11 항 관련으로

한맞 : 도리어, 드디어

북맞 : 도리여, 드디여

들이 있는데, 이것의 이론적 근거도 앞의 -어 / 아의 적기 이론과 같다.

9) ㅞ 불규칙 용언의 적기

ㅞ 불규칙 용언의 적기는 한글학회의 한글 맞춤법 (* 1984 : 20, 6)에서는 ‘-워’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1988년에 ‘한맞’이 공

포되면서 현재와 같이 단음절 어간 아래에서만 ‘-와’로 쓰기로
규정한 결과

한말 : 고마워, 가까워도, 괴로워서, 아름다웠다.

북말 : 고마와, 가까와도, 괴로와서, 아름다웠다.

북말 10항, 5)와 관련된다.

10) 합성어 및 파생어

이 문제는 순수한 맞춤법의 문제가 아니고, 표준어 문제와
맞물려 있다. 중요한 차이를 몇 개 들어 보인다.

한말 : 제 27 항 관련

북말 : 제 14 항 18 항 관련

한말 : 옷집, 시허엿다. 새까맣다. 새빨강다. 새파랗다. 새하얗다. 시꺼
멩다.

북말 : 옷집, 싯허엿다. 섯까맣다. 섯빨강다. 섯파랗다. 섯하얗다. 싯꺼
멩다.

이 맞춤법의 차이는 하나의 유형은 한 형태로 처리하려는 의도
에서 제정한 규정인지, 실지의 발음이 그렇게 실현되어서 그렇게 제
정한 것인지 그 밑바탕이 되는 이론을 이해하기 힘들다.

실지의 발음 시허엿다 → Siĥəjəhta

새하얗다 → Sāihəjahta

싯허엿다 → Siĥəjəhta

섯하얗다 → Sāiĥəjahta

이다.

11) 사이시옷

이 사이시옷은 앞의 단어나 형태소와 뒤의 단어와 형태소가 어울릴 경우에 본디말에는 없던 된소리가 덧나기도 하고 모음으로 끝난 단어의 뒤에 ㄴ, ㅁ으로 첫소리를 삼는 단어와 연결될 경우에 ㄴ 소리가 덧나기도 하고 앞 단어의 모음과, 뒤의 단어의 모음이 ‘이’나 ‘ㅣ’가 선행하는 모음일 경우에 ㄴㄴ소리가 덧나기도 하는 여러 경우가 있어서 맞춤법 규정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 ‘한맞’과 ‘북맞’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골라 그 차이를 살피기로 한다.

한맞 : 30 항의 1), 2), 3) 과 관련

북맞 : 현재의 북맞에는 규정이 없어 현대 조선말 사전 (1981. 백과사전출판사) 로 대신한다.

한맞 : 고랫재, 꺾밥, 냇가, 멧나물, 빗물……

북맞 : 고래재, 귀밥, 내가, 메나물, 비물……

12) 준말

(1) 어간의 ㅏㅑㅓ에 ‘이어’가 이어진 환경

한맞 : 제 18 항 관련

북맞 : 제 12 항, 1) 과 관련 제 16 항 관련

한맞 : 싸이어, 보이어, 누이어, 쓰이어

북맞 : 싸이여, 보이여, 누이여, 쓰이여

※ ‘누이어’의 준말로는 ‘누여, 뉘어’가 있고, 쓰이어의 준말로는 ‘쓰여 씌어’의 두 형태가 있다.

(2)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면서 뒤의 자음이 거센 소리로 나는 경우.

한말 : 제 40 항 [불입] 1 과 관련

북말 : 제 13 항 ‘그러나’와 [불입] 관련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난다.

한말 : 이렇지, 그렇지, 저렇지, 어떻지, 그렇잖다. 저렇잔다.

북말 : 이리치, 그러치, 저리치, 어떠치, 그렇잖다. 저러찮다.⁽¹⁾

2. 띄어쓰기의 차이점 비교

이 띄어쓰기의 차이는 ‘한말’과 ‘북말’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띄어쓰기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라기보다 문법적 체계, 서술의 차이 등에 바탕을 둔 지역적인 차이이다. 다음에 이 차이점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한말에서는 맞춤법 규정의 한 장에 넣어 설명하였는데 ‘북말’에서는 맞춤법과 대등한 위치에서 다루었기에 북말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시키겠다.

1) 총칙의 차이

(1) ‘한말’에서는 맞춤법 총칙의 제 2 항에서 띄어쓰기의 큰 버리를 규정하였다.

(2) ‘북말’에서는 조선말 규범집의 네 큰 규정 중에 맞춤법과 대등하게 독립적으로 다루었다.

주 : (1) 이은정 (1989) 남북간의 맞춤법 비교 검토 한글 205 호

2) 장절(章節)의 가름

(1) '한말'에서는 맞춤법 총칙의 제 2 항과 제 5 장 41 항에서 50 항까지에서 다루었다. 총 항수는 10 개 항

(2) '북말'에서는 총칙 이외에 5 개 장 22 개 항으로 '한말'보다 12 개 항이 많다.

3) 서술의 방법

(1) '한말'에서는 규정 본문은 규정의 전체적인 설명에 그치고 예문은 뒤로 미루었다.

(2) '북말'에서는 규정의 본문의 대원칙 속에서 단어 전체를 열거하고, 그 열거한 단어의 용례는 '례:'로 내세웠다.

4) 규정의 범위

(1) '한말'에서는 단어를 바탕으로 띄어쓰기를 규정하였다.

(2) '북말'에서는 단어와 단어의 연결에 바탕을 두어 외연(外延: denotation)이 지나치게 확장된 관계로 붙여 쓰는 경우를 무원칙하게 넓히었다.

5) 문법체계와 띄어쓰기

(1) '한말'에서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여, 단어의 개념과 띄어쓰기의 개념이 엄격히 구별된다.

(2) '북말'에서는 단어의 개념만 분명하면 띄어쓰기에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까지를 모두 띄어쓰기 규정에 포함시키었다.

보기: 제 2 항의 본문(본문참조) '명사들이…… 묶어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어쓴다' 하였는데, 이것을 '명사들이…… 묶어지는 덩이를 합친 말이라 한다'로 바꾸면 이것은 합성어의 문법적 규정이다. 합성어는 한 단어다. 단어는 자동적으로 띄어 쓴다. 그러면 이 제 2항의 규정은 띄어쓰기 규정으로서는 불필요한 것이다.

'북맞'에서는 이와 같이 문법적 체계 문제에서 해결될 것까지를 띄어쓰기 규정으로 다룬 것이 지나치게 많다.

(3) 용언의 문법체계와 띄어쓰기

① '한맞'에서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아울러 한 단어로 보았기 때문에 '단어는 띄어 쓴다.'하면 용언은 자연스럽게 붙여 쓰는 한 단위가 된다.

② '북맞'에서는 용언의 어간만 단어로 보고, 어미는 '토'로 보았기 때문에 '토와 어우른 동사 형용사'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6) 총괄적인 차이

'북맞'에서는 문법적인 문제까지를 띄어쓰기 규정에 포함시킨 관계로 불필요한 조항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반면, 너무 세분화시킨 관계로 조문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개별적으로 처리한 규정이 많아서 '띄어쓰기 사전'이라도 별도로 있어야 정확한 띄어쓰기가 가능할 만큼 복잡하다. 규정은 간략하면서도 명료하여야 하는 것이 이해에 쉽다.

Ⅳ. 공동연구방안

현재의 한국과 북한의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맞춤법의 차이에 있어서 여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인식의 차원이나 정신적 자세나 시각적 차이가 그 벌어진 폭이 너무나 크다. 이러한 심화된 차이를 바로잡으려면 피차 끈질긴 인내와 신뢰의 바탕 위에서 하나하나를 침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에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연구하여야 할 과제 시정하여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적어 제시한다.

1. 한국은 언어를 순수한 의사 표시의 전달 매개체로 인식하는데 대하여 북한에서는 이 근본 정신은 뒤로 미루고, 혁명 완수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 점을 공동의 화해 정신에 입각하여 심각하게 논의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맞춤법에서는 조선말이나 조선글이란 술어는 일체 쓰는 일이 없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한글'이나 국어라는 말은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조선말 조선글이다. 그리하여 '조선말 규범집, 조선말, 조선글, 혁명의 수도 평양' 등 이런 말만을 쓰고 있다. 이런 현실은 겉으로 드러난 용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을 깊이 헤아려 이 점을 공동의 주제로 삼아 깊이 있게 인내성을 가지고 해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맞춤법이나 표준말은 조국이 분단되기 전부터 남과 북에서 공통으로 써 오던 것이다. 타의에 의하여 국토는 분단되었다 할지라도 말이나 글은 분단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럴수록 하나의 구국 정신으로 말과 글의 통일에 힘써야 할 것이 한국과 북한에 공통적으로 힘써야 할 임무요 당위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굳이 조선말 규범집을 만들고 문화어 발음법을 만들었다. 이런 정신의 밑바탕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위험한 사고방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서로 흥금을 털어 놓고 참을성 있게 토론하여 공동의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어휘의 정리 문제도 심각하다. 어휘는 말을 끊어 말하는 단위이다.

이 어휘의 발음 문제, 뜻의 규정 사용의 범위 등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열려(烈女)는 한국에서는 순전히 남편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한 어질고 매서운 여자’로 쓰이는 것이 통례인데, 북한에서는 이 뜻 이외에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적 정신을 발휘한 남성을 열사(烈士)라고 칭하는 데 대한, 여성의 존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휘의 발음 의미, 사용 등에 대한 차이를 최소한으로, 나아가서는 아주 없게 하기 위한 공동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문법의 체계에 대하여도 남북이 현격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어우른 것을 한 단

어로 보고 있는 데 대하여 북한에서는 체언 다음에 붙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토’라는 개념에 뭉뚱그리고, 용언의 어간만을 한 단어로 보고 있다. 기타 합성어, 파생어…… 등등 문법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도 통일된 단일한 문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이어야 할 것이다. 이 공동 노력이 중하고도 크다.

6. 문법 술어의 정리 문제도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북한 용어의 해설(1989 : 335 ~ 344)’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의 문법 술어가 판이하게 다른 것이 대부분이다. 남북이 통일되었을 경우,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술어를 동일한 나라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도 상호 신뢰와 이해의 바탕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 (1989. 6) < 북한의 초기 철자법과 문법 연구 > 정신문화
연구 36.
- 책임편집 (1989) < 북한의 말과 글 > 을유문화사
- 김민수 (1989) < 북한의 국어연구 > 일조각
- 문교부 (1988) < 한글 맞춤법 > 국어연구소
- 한글학회 (1933) < 한글 맞춤법 통일안 > 한글학회
- 한글학회 (1983) < 한글 맞춤법 > 한글학회
- 이은정 (1989 a) 한글 205 호 한글학회
- (1989. b) < 남북한의 문법체계 비교 검토 > 말과 글
1989 가을호. 한국교열기자회 발행

남북한 한글맞춤법 비교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제 4 연구관실)

인쇄소 : 웃 고 문 화 사
